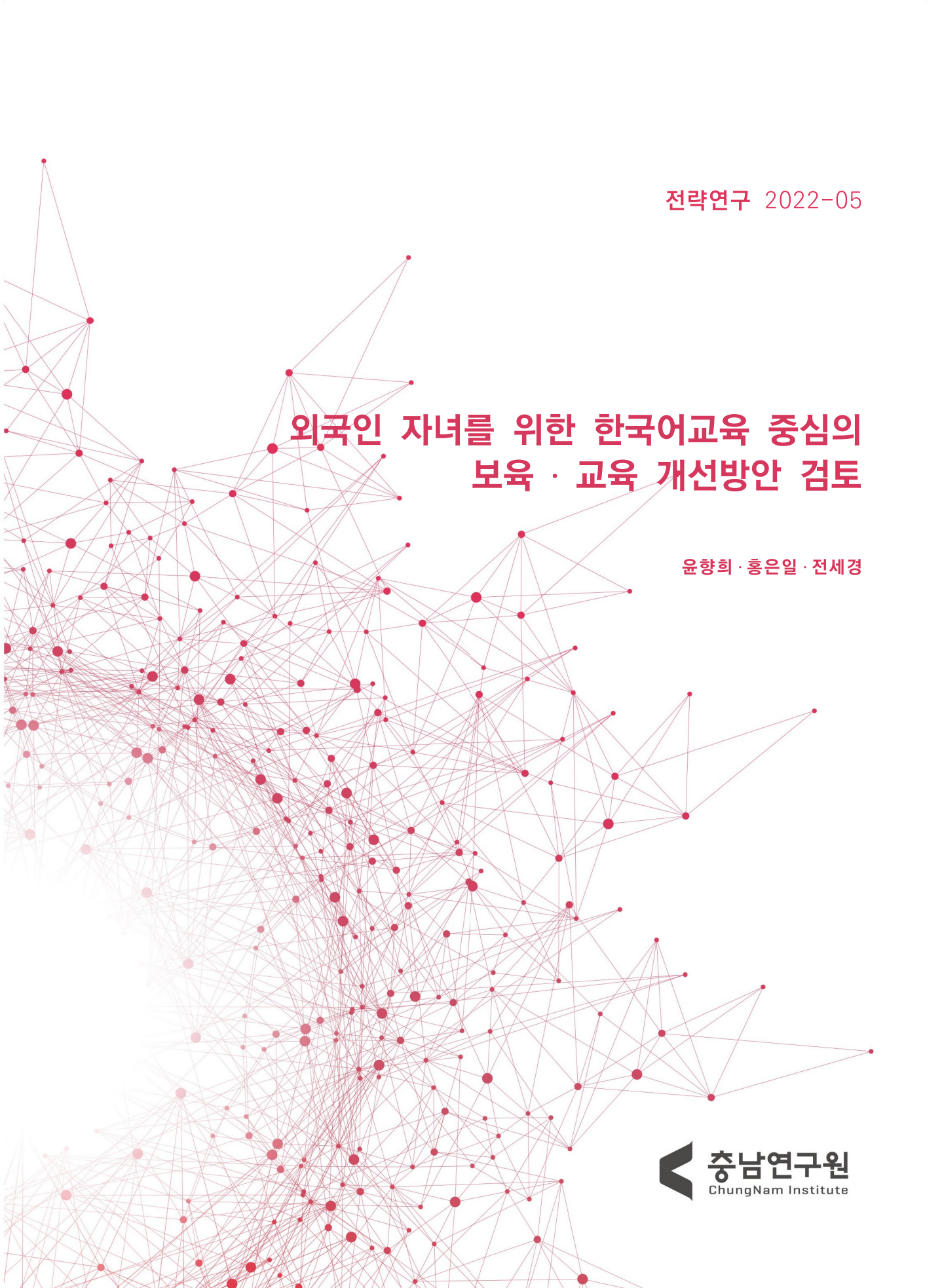




전략연구 2022-05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 · 교육 개선방안 검토

윤향희 · 홍은일 · 전세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수행절차	12
 제2장 외국인 국내체류 및 그 자녀의 보육·교육지원 현황	 13
제1절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3
1. 외국인의 유형 및 한국 입국 배경	13
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8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33
1. 외국인가정 자녀 유형	33
2.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36
3.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미지원	43
4.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47
 제3장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지원제도 및 정책	 52
제1절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지원 근거	52
1. 유엔아동권리협약	52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55
3.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56
4. 다문화가족지원법	58
5.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59
제2절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61
1. 법무부	61
2. 여성가족부	74
제3절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75
1.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75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76
3.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77
4.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78
제4장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80
제1절 보육·교육 실태조사	80
1. 연구내용 및 대상	80
2.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84
3.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	88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입국 전·후 보육 및 교육	93
1. 한국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경험	93
2. 한국 입국 후의 한국생활 적응 검토 및 부모 지원	95
제3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실태분석	101
1.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분석	101
2.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 분석	101
3.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102
제5장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중심의 개선 방안	103
제1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지원	103
1.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103
2.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기관 한국어 강사 지원	105
3. 가족센터와 연계학습 프로그램 강화	107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 언어 교육지원 확장	108
1.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 강사 지원 확대	108
2.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시간 확충	110
3. 외국인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노력	112
제3절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15
1. 재량권한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115
2.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8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과	10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22
참 고 문 헌	123

표 목 차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8
[표 2]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20
[표 3]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21
[표 4] 등록 외국인 충청남도 거주 현황	22
[표 5]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연도별 증감추이	23
[표 6]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23
[표 7]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국적별 현황	23
[표 8] 외국인유학생 현황	24
[표 9] 외국인유학생 국적별 현황	25
[표 10] 시도별 외국인 연령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2020년 기준)	26
[표 11] 연령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2020년 기준)	27
[표 12] 연령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	28
[표 13] 충청남도 다문화학생 현황	31
[표 14]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을 추이	32
[표 15]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36
[표 16]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37
[표 17] 충청남도외국인주민 자녀(0~5세 아동 수)	38
[표 18] 외국인가정 자녀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현황	39
[표 19] 다문화정책학교 유형별 운영	40
[표 20] 다문화 유관기관	42
[표 21]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48
[표 2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61
[표 23]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추진 경과	62
[표 24] 외국인정책과 외국인 한국어 교육	66
[표 25]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71
[표 26]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72
[표 27] 체계적인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	72
[표 28] 중앙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72

[표 29]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73
[표 30]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교육지원	81
[표 31] 외국인가정 부모의 자녀의 언어 교육 지원	81
[표 32]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기관의 일반적 특성	82
[표 33]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기관의 일반적 특성	82
[표 34]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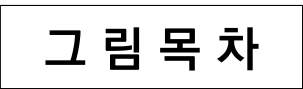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개요	12
[그림 2]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	29
[그림 3] 국내 다문화학생 유형 및 학교급별 재학 현황	30
[그림 4] 국내 다문화학생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30
[그림 5] 국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을 현황	32
[그림 6] 국내 생산기능 인구추계	69
[그림 7] 부양비 추계	69
[그림 8] 학령인구 추계	7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진행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계 속에 급속도로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이주와 교류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 되었다. 이러한 결과 한 사회 내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며 생활 속에 흡수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3D 업종의 기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의 수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배경이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두는 젊은 유학생 등이 증가하였고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결혼이주자도 많이 유입되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진입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등에 대한 법률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과 같이 새로운 다문화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시행 중이다. 현재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진행에 있다.

하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시행법 중 외국인가정 자녀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자녀와, 이들의 이주배경자녀와는 달리 어느 정책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란 부모 중 한 사람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가정의 자녀이며

국내의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노동자가정, 재외동포가정, 유학생가정, 난민가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은 ‘난민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가정과 는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의자녀 중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출생자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출생 자녀는 부모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유아 시기 한국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 입국 시기는 주로 학령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한국 출생 자녀이든 중도입국 자녀이든 간에 이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부모가 외국인이고 한국어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들은 가정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본국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으로 외국인가정 자녀는 언어사용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중도입국자녀 유형 중 재외동포(F-4)의 자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국 국적의 비중이 가장 크며 중앙아시아, 러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H-2)의 체류 자격자에게 배우자의 동반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국적동포의 업무개선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고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 내용의 사항을 살펴보면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동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재학 중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학(受學)을 위해 부 또는 모가 체류 자격의 만기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수학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허용하였다. 이에 재외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가 체류기간 까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중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에서 체류기간은 최초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장을 통한 체류로 1년 10개월의 체류가 가능하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 재입국한 후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을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한다. 특정활동(E-7)의 체류자격은 한국에서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활동(E-7)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자격 변경 후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사는 외국인가정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두는 젊은 유학생 등이 증가하였고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결혼이주자도 많이 유입되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자녀¹⁾가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체류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거의 대부분이 국내 출생 자녀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제2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제3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밖의 아동의 출생등록권(제7조), 가족재결합권(제9조), 건강권(제24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8조),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2).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교육관계법상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외국인아동이나 미등록 아동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김미정, 2018).

이주배경자녀 중 결혼이민자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에 한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난민도 난민법에 의하여 국내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밖의 외국인가정 자녀는 보육 및 교육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의 장이 옮겨지면 여러모로 불안한 정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언어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교 부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유아의 언어발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지능력과 감각적 능력 향상으로써 이는 언어와 기억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받아들이고 언어를 표현하는 기술이

1) 이주배경자녀란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였거나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18세 미만의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를 둔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모두 유아기에 빠르게 발달하는데 특히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 유아기에 말을 시작 하게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도 활발해지면서 언어발달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소득에 비해 많은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의 한국어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 또한 한국어가 부족한 상황으로 자녀에게 언어교육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본국의 언어이다. 본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경우 언어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한국어교육은 어려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Bennett(2007)은 “미국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국가교육 향상평가에서 모든 과목에서 백인학생들의 평균점수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의 평점보다 높았다. 그리고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보다 중도탈락률이 높았다” 이 분석에 의하면 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 교육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이탈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다시 저소득계층으로 편입되어 생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May(2005)는 “소수 민족의 언어에 노출될수록 주류사회의 언어습득이 늦어지며 주류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난다”(박혜랑·김현철, 2016).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다. 가정에서는 본국의 언어로 부모와 소통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 친구들과의 대화, 교과과정 중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에 노출되고 있지만 한국어 부족으로 나타나는 또래 관계 형성,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집중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학습을 이해하며 따라가기 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교육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2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학교 교과과정을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당수의 외국인가정 자녀는 학업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학교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중도입국 한 경우 한국어를 새로 익혀야

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을 위한 정책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충청남도는 외국인주민 분포도가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2021). 충청남도의 외국인주민 분포도가 높은 것은 외국 인력의 수요가 많은 공단 지역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동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외국인인구 분포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의 수도 이와 같이 분포하고 있다.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가정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과 돌봄의 통합서비스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며(전세경외, 2021) 이를 위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의 지원 현황 및 이들의 요구의 실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차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타 시도와 다른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별적 정책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외국인이 타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언어이다.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은 한국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은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영·유아시기 언어습득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 과정 습득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 입국 초기 언어 습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인가정 자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언어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는 영·유아 시기의 외국인 자녀는 한국어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 주민이라 한다. 그리고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 납부가

이루어진다. 이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가정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어 습득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육의 양극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학습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도입국 한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한국 입국 전 한국어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국하여 한국의 학교에 진학하였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 학습에 있어 한국어 습득은 매우 중요하며 학교 교과과정과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과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지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에 있어 내국인과의 지원과 다른 보육 및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지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는 한국어교육과 함께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외국인가정 부모가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외국인가정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을 살펴 본 후 이들의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지원 확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외국인노동자가정, 재외동포가정, 유학생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다문화정책학교로 선정이 된 초등학교의 다문화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3그룹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다문화정책학교의 협조를 얻어 논산, 아산, 천안의 다문화정책학교와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외국인가정 부모는 재외동포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외국인 유학생 가정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선정하였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녀교육에 있어 겪는 여러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 해결 방안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가정의 형성은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는 가족동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교육,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을 한다.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가족동반 입국이 이루어지지만 오랜 시간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였기에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 외국인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며 자녀를 낳아 가정이 형성된다. 유학생생활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구해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이 형성과 함께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2) 시간적 범위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와 관련된 학술적·정책적 동향, 통계조사 및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자료의 분석은 코로나19의 전과 후의 차이를 보이지만 가급적 2021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였다.

3) 지리적 범위

이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례조사의 경우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논산, 청양이다. 이 지역은 충청남도의 다문화 정책학교에서 연구 협조에 응한 학교이다.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연구 협조에 응한 지역으로 서산, 당진, 청양 지역이다. 또한, 외국인가정 부모의 협조를 얻은 곳은 천안, 아산, 당진, 논산이다. 충청남도에서 외국인 체류가 많은 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선정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청양 지역이 참여하였다.

4) 내용적 범위

제1장에서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보육 및 교육현황을 제시하였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으로 외국인의 유형 및 한국 입국 배경과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양극화의 사항으로 외국인가정 자녀 유형,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미지원과 함께 영·유아 언어발달의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으로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 지원 근거와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조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가정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원장,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외국인가정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체계구축 마련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 및 실태조사, 세미나와 간담회 그리고 면담의 내용 등 다양한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앞으로의 정책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바탕이 되는 언어교육의 중요성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연구진 및 보육기관, 교육기관, 유관기관, 수혜자 및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1)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정리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현재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그리고 지역별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서울,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남도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살펴보았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교육지원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보육지원과 교육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입국 후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의 여건 분석으로 충청남도 다문화학생 현황,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 충청남도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실제 지원 가능한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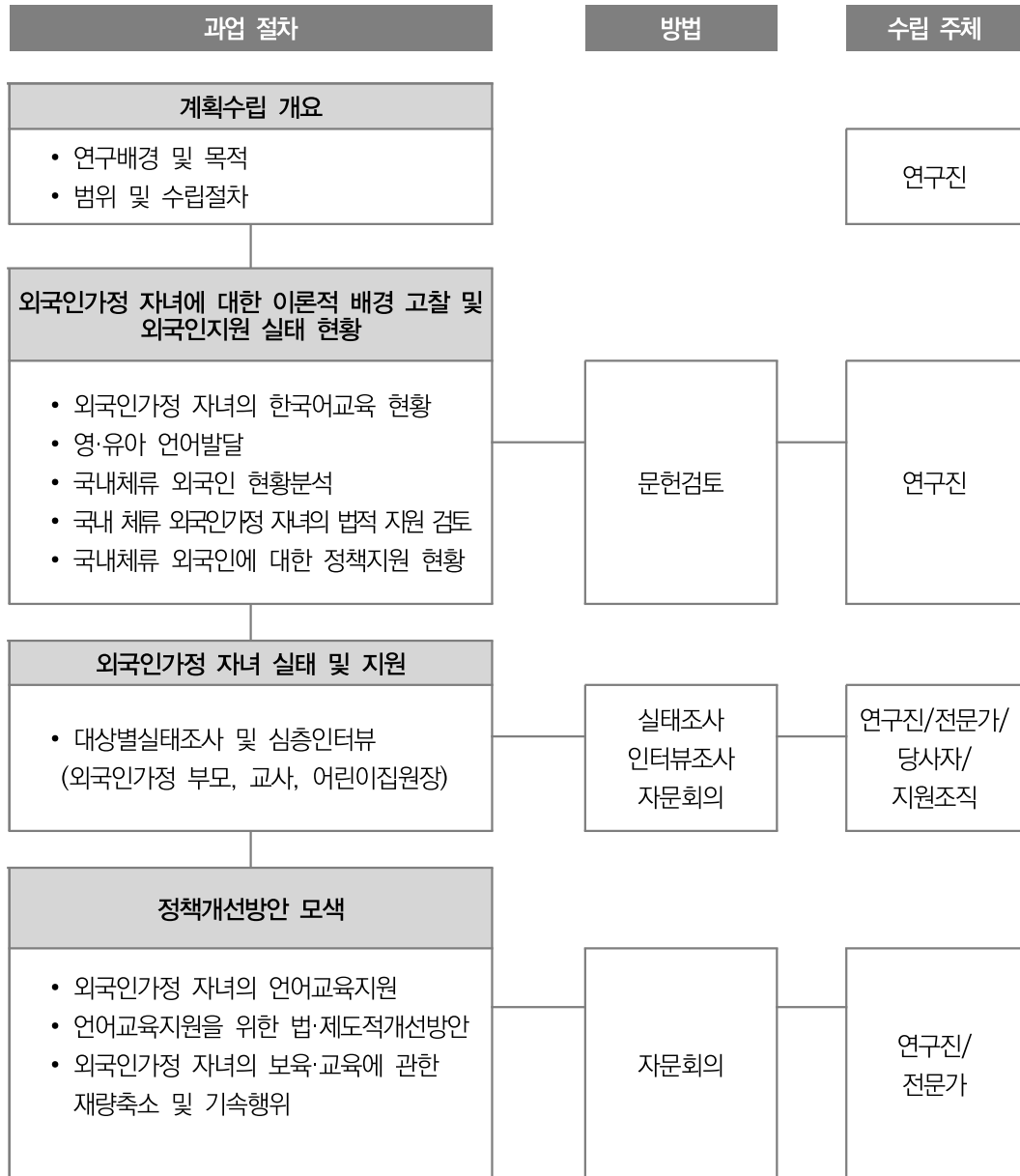
2) 세미나 및 간담회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07월 27일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정책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사항과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학습시간, 한국어강사와 다문화강사의 채용시간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다문화학생의 방과 후 교육지원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다문화 담당 교사의 다문화이해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한 사항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8월 23일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3) 면담조사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교육지원의 요구의 주체인 외국인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7월~8월까지 자녀의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었다.

3. 연구 수행절차



[그림 1] 연구 개요

제2장 국내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제1절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 외국인의 유형 및 한국 입국 배경

1) 외국인의 유형

본 연구에서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외국인유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외국인의 입국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형태로는 외국인 노동자로 비숙련노동자(E-9)이다. 그리고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으로 방문취업(H-2)이 있다. 방문취업(H-2)은 재외동포는 과거 한국인이었던 자의 자손으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이다. 외국인유학생은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이들의 체류형태는 어학연수(D-4),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과정 모두 (D-2)의 체류형태로 분류된다.

2)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입국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입국 시작은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기초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산업기술연수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준비를 계기로 한국 내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특히 제조업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해졌고 정부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기술연수생제도를 참고하여 1991년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도입되었다. 1993년부터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의 대책으로 종업원 10명에서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원칙적인 1년 고용과 1년 연장 기간으로 하는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 시행하였다. 이처럼 산업기술연수제도 실시 후 낮은 임금 현장에서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못해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강요 속에서 산업연수생은 연수를 받는 곳으로부터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1995년에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산업연수생도 산업재해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1998년 산업연수생이 2년간 연수를 마친 후에 연수를 받은 기업의 추천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면 기업에서 1년 간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연수취업제도가 신설되었다. 그 후 2002년에 연수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연수 후의 취업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 확대라 할 수 있다. 1990년 중반부터는 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정식으로 저숙련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실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계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큰 혜택을 받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을 가장 반대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가맹한 기업들은 싼값에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생을 모집하거나 알선하며 이들을 연수 관리하는 문제점과 국내에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비와 출국 수수료 그리고 귀국 보증금 등 입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부당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산업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곳으로부터 도주하게 되면 맡고 있던 보증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익으로 남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장기적 인구감소와 잠재적 성장률 저하로 인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심각한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병행되어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에 통합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1년을 허용하고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 방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정해졌다. 또한 연수생제도에 있어 연수생의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에서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중개료의 부당 청구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고용허가제에서는 한국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나라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은 시행초기 3년의 체류기간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순환교체가 엄격하게 준수되었으나 기업의 외국인력 숙련화 등을 통해 전문 인력 등의 요구로 외국인의 체류는 점차 연장되었다. 2012년 2월에 ‘성실 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기존 3년의 체류와 추가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한국에서의 체류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국내로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1회에 한정하여 4년 10개월의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의 재입국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3) 재외동포의 한국 입국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과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조선족의 입국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20세기 전후로 이주한 조선계 혈통을 지닌 중국인으로 중국 정부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중국 국적자만을 조선족이라 의미한다. 이들 중 과반 정도는 한국 정부의 특별대우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며 이들은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 등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인들에게 한국인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정착되면서 과거 조선족이라는 단어는 중국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중국계 조선족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정착되어 표기하여 표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조선족의 해외진출은 활성화되었으며 그 중 가장 해외진출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1980년대 후반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2022년 한국 체류 조선족은 약 70만 명 정도이다.

1980년대 중·후반 조선족은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 간단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조선족은 한국에 입국할 때 한약재를 가지고 입국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것으로 큰돈을 벌게 되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 ‘코리아

드림'의 불을 지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한국 내 조선족의 입국 증가와 함께 체류가 늘어나면서 1990년대 초반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조선족은 1990년대 초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합법적인 입국통로가 좁아지면서 조선족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혼인을 통한 새로운 입국방식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조선족 남성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조선족 여성들은 식당과 가사도우미와 같은 서비스직 노동자로 입국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동은 우선 한국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력 수요가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한국의 임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래 조선족은 지위상승의 열망과 중국 내 중앙으로 진출할 기회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족의 가장 큰 한국 생활의 장점으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가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였다 할 수 있다. 조선족노동자들의 집단행동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라 최근 방문취업을 5년간 복수로 허용하고 있으며, 재일동포 비자는 3년의 체류기간을 두고 있다. 2010년에는 조선족 여성 육아도우미와 가사도우미 그리고 간병인과 복지시설보조원 등의 서비스직에 종사가 늘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종사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 고려인의 입국

고려인은 소련 붕괴 후 구 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의미한다. 고려인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며 조선족의 25% 정도에 해당된다. 이들 다수가 러시아의 사할린과 극동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구소련 국가에 주로 많은 거주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주를 시작으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고려인을 한민족 동포라고 일컬었다. 이들은 193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고려인으로 불리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고 연방해체에 따른 새로운 국가의 성립

과정의 짧은 시기를 거치며 한국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모국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며 한국으로의 입국자들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러시아 연방의 경우 1993년에 러시아 고려인의 복권에 대한 법령이 최고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완전한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인들의 협회 및 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인협회의 구성 및 연락망의 역할이 가능해졌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15개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하였다. 독립국가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소련 당국으로부터 인정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했던 고려인들은 타격을 입었다. 언어 문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했고, 고려인들의 입지는 점차 악화되었다. 상당수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특히 연해주로 재 이주 하였는데, 2000년대 초까지 약 7~8만 명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려인은 귀환하려는 고려인동포가 많아졌고, 2010년대 중반부터 그 수는 해마다 대폭 증가하였다.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국내거주 고려인은 2020년 4월 기준 85,072명이며, 국가별 비중은 우즈베키스탄 46%, 러시아 33%, 카자흐스탄 15%이다. 안산을 비롯하여 아산·인천·경주·광주(광역시) 등에 많이 거주하며, 안산 땃골마을과 광주 고려인마을 등에서 집단 거주지로 생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아산의 신창과 둔포, 당진의 합덕 등의 지역에 집단 거주지의 생활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한 법적 지위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일부 업종에 대하여 취업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게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정해지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부여 받아 한국에서의 체류를 영위할 수 있다. 재외동포(F-4)는 2004년 이전에는 재미동포에 한정되었으나 2004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아 재일동포, 재중동포 등 부모나 조부모(외조부모)가 한국 국적자 혹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었다면 재외동포의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다.

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 한국 입국 외국인 현황

(1)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56,04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약 252만 여명에서 2020년 203만 여명, 2021년 195만 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2년 4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어 2022년 6월 국내체류 외국인은 205만 여명으로 2021년에 비해 약 10만 여명이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연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 록	거소신고 ²⁾	
2011년	1,395,077	1,117,481	982,461	135,020	277,596
2012년	1,445,103	1,120,599	932,983	187,616	324,504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2,367,607	1,687,733	1,246,626	441,107	679,874
2019년	2,524,656	1,731,803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610,323	1,145,540	464,783	425,752
2021년	1,956,781	1,569,836	1,093,891	475,945	386,945
2022년 6월	2,056,041	1,595,707	1,109,700	486,007	460,334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자의 수는 2019년 127만 여명과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자의 수는 79만 여명으로 가장 많이 체류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신고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 등록자의 수와는 다르게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의 입국과 함께 동반 입국자의 수 또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춰야 할 일정한 자격이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를 말한다. 체류자격은 90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하면 단기 체류 자격, 90일 이상이면 장기 체류 자격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에 맞는 체류자격을 발급 받아야만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22년 3월	'22년 4월	'22년 5월	'22년 6월	전월 대비	'21년 6월	전년 대비
총 계	1,966,276	1,987,250	2,012,862	2,056,041	2.1%	1,981,035	3.8%
사증면제(B-1)	163,754	170,608	179,032	192,899	7.7%	170,498	13.1%
관광통과(B-2)	42,873	54,083	62,192	77,156	24.1%	53,296	44.8%
단기방문(C-3)	93,921	93,586	93,161	100,657	8.0%	103,251	-2.5%
단기취업(C-4)	2,304	2,442	2,374	2,751	15.9%	2,991	-8.0%
유 학(D-2)	122,640	121,176	121,139	119,853	-1.1%	107,690	11.3%
기술연수(D-3)	1,655	1,726	1,739	1,726	-0.7%	1,696	1.8%
일반연수(D-4)	54,398	54,392	55,343	57,936	4.7%	51,300	12.9%
종 교(D-6)	1,365	1,380	1,384	1,408	1.7%	1,295	8.7%
상사주재(D-7)	1,021	1,029	1,057	1,078	2.0%	1,045	3.2%
기업투자(D-8)	6,162	6,276	6,380	6,443	1.0%	5,741	12.2%
무역경영(D-9)	2,028	2,073	2,175	2,178	0.1%	2,171	0.3%
교 수(E-1)	2,068	2,072	2,070	2,061	-0.4%	2,155	-4.4%
회화지도(E-2)	13,773	13,788	13,939	13,901	-0.3%	12,830	8.3%
연 구(E-3)	3,693	3,684	3,724	3,719	-0.1%	3,241	14.7%
기술지도(E-4)	181	192	197	199	1.0%	197	1.0%
예술흥행(E-6)	3,433	3,487	3,484	3,525	1.2%	3,145	12.1%
특정활동(E-7)	21,478	22,096	22,313	22,255	-0.3%	19,867	12.0%
계절근로(E-8)	344	1,584	3,472	4,581	31.9%	423	983.0%
비전문취업(E-9)	220,751	221,512	223,374	225,516	1.0%	220,588	2.2%
선원취업(E-10)	18,381	18,352	18,502	19,098	3.2%	17,779	7.4%
방문동거(F-1)	92,114	92,592	94,354	96,654	2.4%	96,653	0.0%
거 주(F-2)	42,888	43,001	43,231	43,552	0.7%	43,020	1.2%
동 반(F-3)	21,645	21,998	22,468	22,696	1.0%	20,232	12.2%
재외동포(F-4)	481,995	483,322	485,131	487,989	0.6%	472,514	3.3%
영 주(F-5)	170,487	171,164	171,867	172,542	0.4%	164,379	5.0%
결혼이민(F-6)	134,676	135,119	135,334	135,621	0.2%	134,110	1.1%
방문취업(H-2)	117,243	115,927	114,985	113,390	-1.4%	139,684	-18.8%
기 타	129,005	128,589	128,441	124,657	-2.9%	129,244	-3.5%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22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56,041명 중 재외동포(F-4)는 전년 대비 3.3% 증가하여 487,989명이다. 중도입국 자녀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의 체류자격도 F-4이다. 비전문취업(E-9)은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225,516명이며, 영주(F-5)는 전년 대비 5%증가하여 172,542명이다. 유학(D-2)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19,853명이며, 마지막으로 방문취업(H-2)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113,390명 순이다. 방문취업(H-2)는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함께 동반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노동자 중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4년 10개월의 기간을 보낸 후, 재입국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금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때 신청하는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이다. 특정활동(E-7)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22,255명이다.

(3)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역별 등록외국인은 총 1,109,700명이다. 경기 361,978명, 서울 230,610명, 충청남도 68,440명, 인천 67,664명, 경남 63,220명 순이다. 이때 충청남도는 지역 거주지역별 순위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데 외국인력의 수요를 요구하는 공단지역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유입이 증가하여 등록외국인의 수가 높다. 국내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충남 ³⁾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1,109,700	361,978	230,610	68,440	67,664	63,220	51,999	40,110	36,690
	전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대전	강원	울산
	33,344	31,350	27,787	21,033	20,686	18,758	18,927	17,104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3) 세종특별자치시 4,932명 포함

(4) 등록외국인 충청남도 거주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4,932명을 제외한 충청남도 외국인 거주 인구 수는 63,508명이다. 지역별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순으로 외국인 거주 현황을 알 수 있다.

천안은 18,359명(동남구 7,880명, 서북구 10,47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산시는 16,341명, 당진시 5,150명, 서산시 3,949명, 논산시 3,829명 순으로 충청남도 체류 외국인의 등록을 알 수 있다. 등록 외국인 중 충청남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등록 외국인 충청남도 거주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충청 남도	계룡시	185
	공주시	1,916
	금산군	1,944
	논산시	3,829
	당진시	5,150
	보령시	2,832
	부여군	1,293
	서산시	3,949
	서천군	1,257
	아산시	16,341
	예산군	1,976
	천안시	18,359
	청양군	642
	태안군	14,24
	홍성군	2,411
	소계	63,508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5) 외국국적 동포 현황

2022년 6월 기준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자 수는 2022년 6월 기준 486,007명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로 최소 약 1만 8천여 명부터 많이는 약 4만 2천여 명까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거소신고자자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국적 동포의 증감률이 줄어들었으나 외국국적동포의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감소 변화는 없었으며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의 연도별 증감추이는 [표 5]와 같다.

[표 5]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연도별 증감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인 원	324,786	368,862	411,337	441,107	459,996	464,783	475,945	486,007
증감률	13.4%	13.6%	11.5%	7.2%	4.3%	1.0%	2.4%	0.6%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큰 편차의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국적 거소신고자는 총 486,007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8,120명, 서울 137,665명, 인천 33,883명, 충청남도 29,526명, 충북 14,50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충남 ⁴⁾	충북	경남	경북	부산
486,007	208,120	137,665	33,883	29,526	14,501	13,229	9,302	6,407
	울산	광주	대구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대전
	6,235	5,462	4,894	3,613	3,595	3,475	3,075	3,025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자의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353,36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43,132명, 러시아 26,523명, 우즈베키스탄 21,854명, 캐나다 17,005명, 카자흐스탄 9,57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국적별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총 계	중 국	미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카자흐스탄	기 타
486,007	353,365	43,132	26,523	21,854	17,005	9,579	14,549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4) 세종특별자치시 1,363명 포함

(6) 외국인유학생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은 2022년 6월 기준 176,186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입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외국인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 6월	'22년 6월
총 계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57,663	176,186
유 학(D-2)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07,690	119,853
한국어연수(D-4-1)	48,208	57,971	61,867	51,545	52,506	49,967	56,313
외국어연수(D-4-7)	4	10	10	6	15	6	20
전년대비 증감률	16.5%	18.9%	12.1%	-14.9%	6.7%	-	11.7%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까지는 180,131명으로 최대치로 유입이 되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153,361명으로 14.9%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점차 외국인 입국 허용을 통해 차츰 다시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유학생은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로 다양한 체류자격의 형태로 국내에 입국한다. D-2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D-4는 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 중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한국에서의 취업과 함께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이들의 정착을 위해 우수인재의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와 정착에 대한 요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외국인유학생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유학 (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총계	176,186	119,853	56,313	20
베트남	67,948	31,830	36,115	3
중국 ⁵⁾	49,265	44,549	4,716	0
한국계	663	660	3	0
몽골	9,458	5913	3,545	0
우즈베키스탄	9,254	7521	1,733	0
일본	5,240	2521	2,719	0
네팔	2,689	2505	183	1
인도네시아	2,137	1855	282	0
프랑스	2,054	1750	304	0
미얀마	2,023	939	1,084	0
미국	1,978	1656	321	1
인 도	1,640	1442	198	0
파키스탄	1,448	1415	33	0
러시아(연방)	1,448	775	673	0
방글라데시	1,427	1371	44	12
(타이완)	1,289	812	477	0
독 일	1,193	1078	115	0
말레이시아	1,079	879	200	0
태국	1,015	542	473	0
기타	13,601	10,500	3,098	3

출처: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표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베트남,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많은 편이며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국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한국계 포함

2) 외국인가정 자녀 현황

2020년 지자체 외국인주민자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와 국내출생자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유형별 외국인주민 자녀는 전체 275,99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14,344명이고 국내 출생자녀는 261,646명이다.

외국인주민 자녀는 경기도, 서울, 인천, 경상남도, 충청남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귀화 및 외국인국적 자녀는 경기도, 서울, 인천, 충청남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09명이다. 또한, 국내 출생 자녀는 경기도, 서울, 인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이며 15,313명이다.

[표 10] 시도별 외국인 연령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명)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합계	275,990	140,750	135,240	14,344	6,846	7,498	261,646	133,904	127,742
서울	37,517	18,979	18,538	3,297	1,610	1,687	34,220	17,369	16,851
부산	12,263	6,191	6,072	414	193	221	11,849	5,998	5,851
대구	9,170	4,595	4,575	337	146	191	8,833	4,449	4,384
인천	17,432	8,935	8,497	1,348	644	704	16,084	8,291	7,793
광주	6,845	3,551	3,294	186	97	89	6,659	3,454	3,205
대전	6,336	3,204	3,132	190	94	96	6,146	3,110	3,036
울산	5,899	3,013	2,886	180	86	94	5,719	2,927	2,792
세종	1,472	735	737	63	24	39	1,409	711	698
경기도	73,884	37,643	36,241	5,422	2,625	2,797	68,462	35,018	33,444
강원도	8,119	4,128	3,991	178	82	96	7,941	4,046	3,895
충청북도	10,513	5,350	5,163	359	163	196	10,154	5,187	4,967
충청남도	15,927	8,079	7,848	609	276	333	15,318	7,803	7,515
전라북도	13,336	6,923	6,413	331	145	186	13,005	6,778	6,227
전라남도	15,622	8,064	7,558	315	151	164	15,307	7,913	7,394
경상북도	16,627	8,482	8,145	377	177	200	16,250	8,305	7,945
경상남도	20,194	10,426	9,768	535	227	308	19,659	10,199	9,460
제주도	4,834	2,452	2,382	203	106	97	4,631	2,346	2,285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자녀현황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는 8세, 9세, 10세가 18만여 명으로 많이 나타났고 4,~7세, 그리고 11세가 17만여 명이며, 1~2세, 12세가 16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령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명)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275,990	14,344	261,646
0세	15,149	42	15,107
1세	16,560	167	16,393
2세	16,035	421	15,614
3세	16,377	561	15,816
4세	17,116	812	16,304
5세	17,181	794	16,387
6세	17,161	869	16,292
7세	17,318	864	16,454
8세	18,409	894	17,515
9세	18,789	854	17,935
10세	18,515	837	17,678
11세	17,501	956	16,545
12세	16,754	1,032	15,722
13세	14,892	933	13,959
14세	10,848	925	9,923
15세	8,705	915	7,790
16세	7,192	903	6,289
17세	5,903	813	5,090
18세	5,585	752	4,833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자녀현황

시도별 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인천, 서울,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연령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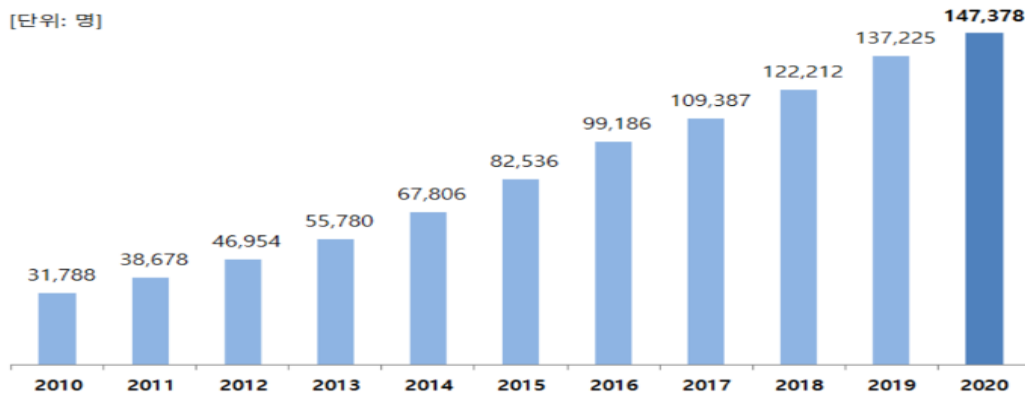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자녀	국내출생자녀
전국	275,990	14,344	261,646
서울	37,517	3,297	34,220
부산	12,263	414	11,849
대구	9,170	337	8,833
인천	17,432	1,348	16,084
광주	6,845	186	6,659
대전	6,336	190	6,146
울산	5,899	180	5,719
세종	1,472	63	1,409
경기도	73,884	5,422	68,461
강원도	8,119	178	7,941
충청북도	10,513	359	10,154
충청남도	15,927	609	15,318
전라북도	13,336	331	13,005
전라남도	15,662	315	15,307
경상북도	16,627	377	16,250
경상남도	20,194	535	19,659
제주도	4,834	203	4,631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자녀현황

3)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

국내 다문화학생⁶⁾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체류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2018년 122,212명, 2019년 137,225명, 2020년 147,3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률 또한 2017년 전체 학생 수의 1.17%, 2018년 1.03%, 20-19년 0.95%로 감소되고 있다.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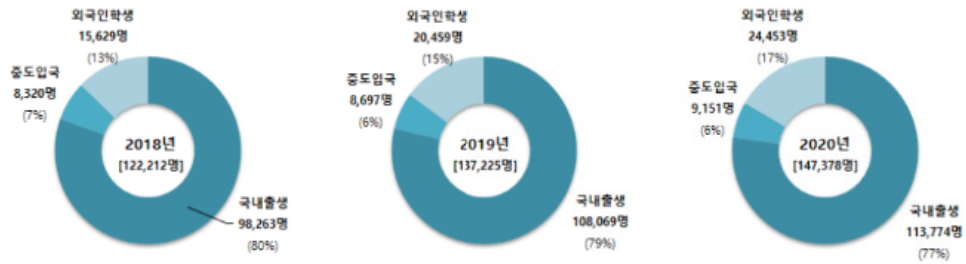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국내 다문화 학생 현황

또한, 국내 다문화학생 유형별 재학 현황으로 국내 출생자녀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학생, 중도입국 학생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 학교급 재학현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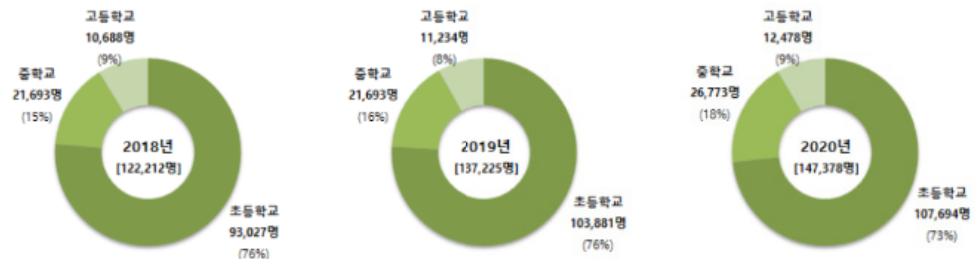
다문화학생 유형별 재학현황과 학교급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교육부에서 다문화학생은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의 중도입국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 다문화학생 유형별 재학 현황



➤ 다문화학생 학교급 재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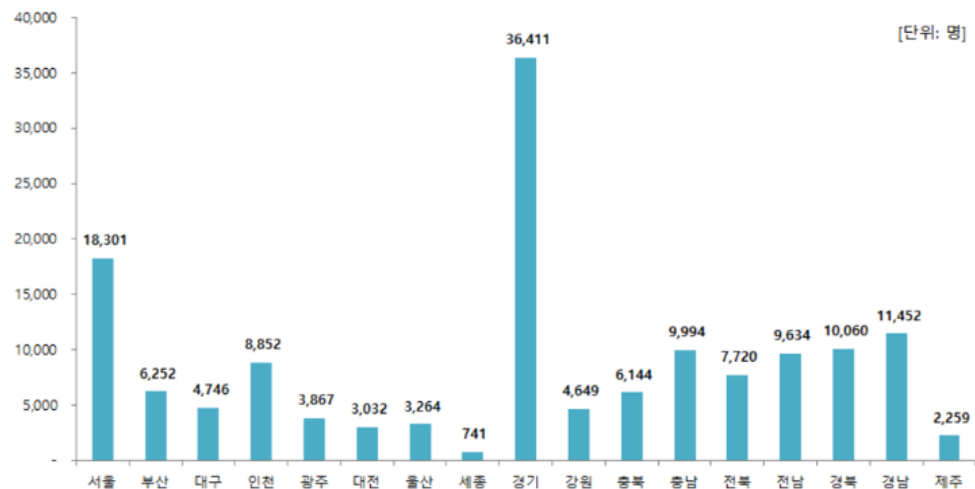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다문화학생 유형 및 학교급별 재학 현황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국내 다문화 유형 및 학교급별 재학현황

국내 다문화학생 시·도별 다문화학생은 경기, 서울, 경남, 충청남도, 인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20년 국내 다문화학생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그림 4] 국내 다문화학생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0년 국내 다문화 학생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2020년 충청남도 지역 다문화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은 총 7,176명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5,811명, 외국인가정 자녀가 1,10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 출생을 5,811명이고 중도입국 자녀는 26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학생은 1,94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자녀 1,507명, 외국인가정 자녀는 289명이며 고등학교 학생은 877명으로 국내출생 자녀 342명, 외국인가정 자녀 13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일반고 482명, 특목고 61명, 특성화고 295명, 자율고 3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충청남도 다문화학생 현황

시 도	학제	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충 청 남 도	초등학교	7,176	3,477	5,811	2,824	263	128	1,102	525
	중학교	1,941	971	1,507	764	145	80	289	127
	고등학교	877	454	652	342	87	47	138	65
	(일반고)	482	273	363	205	54	33	65	35
	(특목고)	61	22	50	17	8	3	3	2
	(특성화고)	295	134	203	98	23	9	69	27
	(자율고)	39	25	36	22	2	2	1	1
	각종학교								
	계	9,994	4,902	7,970	3,930	495	255	1,529	717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21): 다문화학생 현황 재구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은 2012년 78.7%, 2015년 84.5%, 2018년 93.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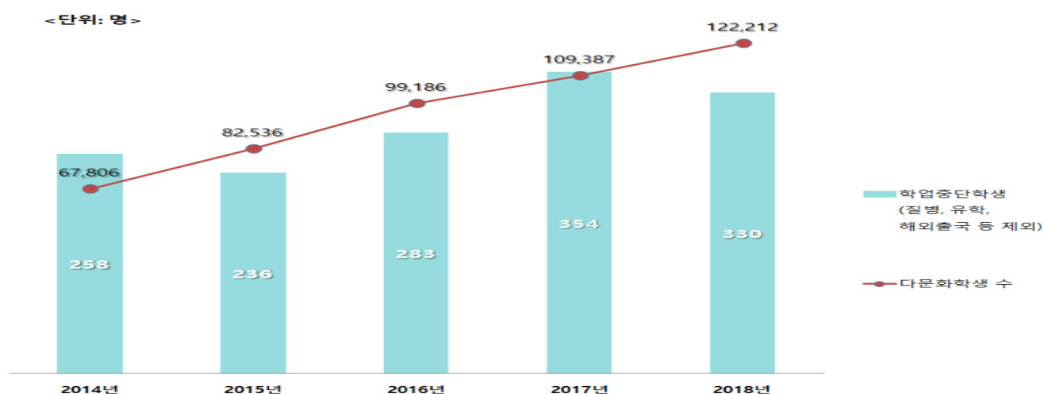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구분으로는 다문화학생 재적과 학업중단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다문화학생 재적 수는 67,806명이었으나 2018년 122,212명으로 54,406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수는 2014년 688명에 비해 2018년 1,263명으로 575명 증가하였다.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수 중 부적응관련 학생은 2014년 258명, 2018년 330명으로 72명 증가하였으며 부적응 관련 학생은 주로 질병, 유학, 해외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하여 학업중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유로는 주로 질병, 유학, 해외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다문화학생 재적학생수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수	688(258)	700(236)	876(283)	1,278(354)	1,263(330)
초	435(110)	423(86)	547(84)	819(126)	810(102)
중	146(75)	159(65)	175(78)	235(83)	243(80)
고	107(73)	118(85)	154(121)	224(145)	210(148)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1.01(0.38)	0.85(0.29)	0.88(0.29)	1.17(0.32)	1.03(0.27)
초	0.90(0.23)	0.71(0.14)	0.74(0.11)	0.99(0.15)	0.87(0.11)
중	1.17(0.60)	1.15(0.47)	1.16(0.52)	1.47(0.52)	1.34(0.44)
고	1.53(1.05)	1.41(1.01)	1.53(1.20)	2.11(1.37)	1.91(1.35)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그림 5] 국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현황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국내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 현황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1. 외국인가정 자녀 유형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외국인유학생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가정의 자녀를 외국인가정 자녀라고 한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가정의 자녀이다.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출생 자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출생 자녀는 표현 그대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한다. 부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을 하더라도 부모의 국적을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된다. 중도입국 자녀는 자신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을 한 자녀를 말한다. 외국인가정 중도입국자녀의 유형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한국으로 부모가 입국할 때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하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 후 따로 입국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러한 경우는 외국인가정 중 외국인노동자가정, 재외동포가정, 유학생가정의 유형을 모두 외국인가정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한국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는 자를 뜻하며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이다. 비전문취업(E-9) 취업자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2004년 8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명문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주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하는 제도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로 이주 노동자가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아시아의 15개국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이 있다. 이들은 4년 10개월이 지난 후 본국에 돌아 간 후 재입국하여 한국에서 10년 8개월의 체류가 가능하다. 이에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길 원하며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비전문취업(E-9)에서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에서 가족동반 체류가 가능해지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을 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가정 중도입국한국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낳아 함께 체류한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외국인가정이라 하며 이 가정의 자녀를 외국인가정 자녀라 한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 또한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다.

2) 재외동포가정 자녀

재외동포가정은 외국인가정과 는 의미가 다르며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동반 입국이 이루어지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소 두 나라 이상의 문화를 경험한 재외동포가정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교육,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 중 중도입국 자녀가 있다.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생활하다 어느 정도 연령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중도입국 자녀 중 재외동포가정의 자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07년부터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관리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특례고용허가제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2007년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 소련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었으며 연고 동포와 무연고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처럼 입국 한 방문취업(H-2)의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재외동포(F-4)는 체류자격 변경을 하여 지속적인 체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류과정 중 고향의 자녀를 데리고 와 한국에서 함께 체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중도입국 재외동포 자녀라 한다. 또한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아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영·유아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어린이 집에서 보육을 하기도 한다.

3) 유학생가정 자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입국 시 배우자와 함께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초청 등에 의해 가정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에서 유학생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며 자녀를 낳은 유학생의 가정 수도 증가함과 동시에 유학생가정의 자녀 또한 부모의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유학생가정 자녀도 한국에서 태어나 영·유아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기도 한다.

2.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1)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1) 주민등록법에 따른 보육지원

외국인가정 자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국인가정 부모는 자녀가 한국에서 영·유아 시기를 보내는 경우 자녀의 보육과 돌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인가정 부모는 주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학령기 이전인 경우에는 자녀의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 돌봄과 학습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는 한국어·한국문화·사회적응 및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가정 부모의 소비에 비해 비용부담이 큰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전세경 외, 2021). 그러나 내국인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보육 및 돌봄 지원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청남도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만0세~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로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 지원 - 종일반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12시간) - 맞춤반 :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6시간)
만3세~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12세 이하 미취학장애아동 -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방과 후 보육료지원 가능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표 15]와 같이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만0세~2세, 만 3세~5세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의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단위: 원)

연령	종일반		맞춤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0세반	454,000	48,500	354,000	485,000	60,000
1세반	400,000	264,000	311,000	264,000	60,000
2세반	331,000	179,000	258,000	179,000	60,000
3세~5세반	220,000	-	-	-	-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표 16]과 같이 연령별 어린이집 지원액이 내국인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외국인가정 부모는 자녀의 보육료를 온전히 지불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 충청남도 외국인가정 자녀 어린이집 이용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서 충청남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98,6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외국인의 자녀는 13,68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주민 현황표). 충청남도의 외국인주민의 자녀 중 5세 이하의 외국이 자녀수는 4,325명이며 전체 외국인자녀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23%에 불과하다. 이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충청남도외국인주민 자녀(0~5세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808	911	843	885	878
천안시	221	261	227	232	226
공주시	39	44	35	50	54
보령시	32	40	26	27	45
아산시	152	166	172	171	153
서산시	65	74	67	64	67
논산시	47	60	49	62	49
계룡시	7	7	13	9	10
당진시	80	71	84	75	80
금산군	22	16	27	40	30
부여군	28	28	22	24	38
서천군	20	25	14	10	20
청양군	11	18	12	21	13
홍성군	37	42	34	46	36
예산군	29	34	35	33	36
태안군	18	25	26	21	21

출처: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보육통계 DW시스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영·유아 자녀 중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자녀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이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확률이 높으며 자녀가 2~3명인 경우 자녀의 보육료 지원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집에서 돌보기도 한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최근 3년 간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가정 자녀는 1,03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아산, 천안, 당진, 논산 순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알 수 있으며 [표 18]과 같다.

[표 18] 외국인가정 자녀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현황

(단위: 명)

시·군명	어린이집 재원외국인 아동 수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007	1,149	1,032
천안시	341	387	345
공주시	17	10	12
보령시	6	7	6
아산시	440	513	445
서산시	60	57	46
논산시	34	50	61
계룡시	-	1	1
당진시	70	78	73
금산군	4	5	6
부여군	3	4	3
서천군	2	2	2
청양군	3	3	3
홍성군	16	18	13
예산군	16	18	13
태안군	3	4	3

출처: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보육통계 DW시스템.

2) 외국인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지원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다문화정책학교 및 연구학교를 두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에 대해 2021년 다문화교육지원 기본계획을 구성하였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법지도의 개선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검토한 주요내용으로 다문화학생의 범위, 학교장의 지원의 의무, 특별학급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밀집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국가 및 지역 지원센터 근거 등과 함께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다문화학생의 공교육진입제도 안착으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법무부와 정보연계 및 각종 유관기관을 통해 국내 학교 진입을 위한 안내자료 및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준비도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기본통계를 바탕으로 다문화유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교부금확보와 함께 다문화 유아의 초기적응을 위한 도움자료 등의 개발과 보급에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계획 수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정책 학교를 두고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한다.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정책 및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정책학교의 운영 추진 목적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모델 마련과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의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추진방향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른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컨설팅과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정책학교가 추진으로 변화한 사항은 현장의 다문화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문화학생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정책학교로 통합하였으며 다문화학생의 정서와 심리상담 및 진로교육 등 맞춤형 교육지원이 실시되었다. 다문화정책학교의 유치원에서도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다문화정책학교 유형별 운영

구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종전: 다문화 유치원)	초·중등 (종전: 다문화 중점학교)	한국어학급 (종전:예비학교)
다문화교육	누리과정 연계	교육과정 연계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다문화학생 (유아)지원	통합·개별언어 교육 등	기초학습, 이중언어 등 맞춤형 교육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정책학교 재구성.

이와 같이 다문화정책학교의 운영함으로서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강화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제공을 위해 한국어학급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시로 학교 안에 특별학급을 형태의 한국어 학급설치와 한국 입국 초기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유아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집중 교육할 수 있는 지원형태이다. 이에 더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진단 지원으로 한국어능력진단과 보정시스템의 개발과 시범운영을 도입하였다. 2019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실시하였으며 2020년 중·고등학교 2021년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사각지대의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지원으로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편입하는 경우 한국어 교육이 지원된다. 그러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지원은 1명의 교사가 2~3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1주일에 14시간 이내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학생에게는 1~2시간의 짧은 한국어 교육이 지원된다. 또한, 한국어교육지원이 필요하여 학기 중에 교육청에 한국어 교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어 교원은 1주일에 14시간 이내의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며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에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준이 다르거나 나이가 상이한 경우에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급 학생의 경우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과 같은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 한하여 다문화교육정책학교가 분포하고 있고 한국어 학급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의 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한다. 충청남도에는 다문화 유관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다문화 유관기관

구분	유관기관
시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4개 시도교육지원청 (논산과 계룡은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구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충청남도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유치원) 33개원	천안: 수신초병설유치원, 천안도솔유치원, 천안성성유치원, 천안신촌초병설유치원, 성환초병설유치원, 아이숲유치원, 사랑유치원 공주: 신관유치원 아산: 아이세상유치원, 해와달유치원,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창초병설유치원, 삼일푸른유치원 서산: 대장유치원, 성연유치원, 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논산: 놀뫼유치원, 강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홍성: 내포유치원, 조양유치원, 가람유치원, 혜전대학교부속유치원, 홍북초병설유치원, 한울초병설유치원 태안: 태안유치원, 모항초병설유치원 보령: 보령창미유치원 당진: 당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합덕초병설유치원 예산: 예산유치원
한국어학급(초중등) 21개교	천안: 성환초등학교, 입장초등학교, 천안신부초등학교, 천안신촌초등학교, 성환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서초등학교, 아산: 관대초등학교, 둔포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아산남성초등학교, 온양중앙초등학교, 둔포중학교, 신창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서산: 차동초등학교 논산: 동성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충청남도인터넷고등학교 당진: 합도초등학교
대학생멘토링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건양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정책학교 재구성.

3.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미지원

1) 주민등록법에 따른 보육료지원

외국인가정 자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국인가정 부모는 자녀가 한국에서 영·유아 시기를 보내는 경우 자녀의 보육과 돌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인가정 부모는 주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학령기 이전인 경우에는 자녀의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 돌봄과 학습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는 한국어·한국문화·사회적응 및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가정 부모의 소비에 비해 비용부담이 큰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전세경 외, 2021). 그러나 내국인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보육 및 돌봄 지원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만0세~2세, 만 3세~5세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과 같이 연령별 어린이집 지원액이 내국인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외국인가정 부모는 자녀의 보육료를 온전히 지불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려움 호소

사례 1 “네팔 국적의 30대 여성 A씨.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어둡고 습한 방 하나에서 남편과 아이 둘, 네 명 가족이 생활한다. A씨는 몇 해 전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A씨가 진학한 지역대학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수업에도 등록금은 똑같았다. 마음 같아선 휴학 하고 싶었지만 휴학 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10여만 원 넘는 월 보험료가 부담 돼 하지 못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떠 안고 있는 가운데 A씨의 가장 큰 고충은 육아다. 부부가 외국 국적인 탓에 두 아이 모두 아동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육아 경비는 고스란히 부부의 몫이다.”

사례 2 “한국에 거주한 지 2년째인 러시아 국적의 여성 B씨. 지난해 10월 천안으로 주거지를 옮기며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B씨의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아이 전학에 걸림돌이 됐다. 교육지원청을 통해 겨우 전학이 성사됐지만 어려움은 남았다.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문을 두드렸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라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천안의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 부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지침에서는 한국인 배우자나 동포비자가 아닌 외국 국적의 자녀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해 민간서비스 이용에 제약 받고 있다.”⁷⁾

3) 타 시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그동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지원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쳐 지자체별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이 시작되었다. 외국인가정의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의 외국인자녀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청주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 시흥, 부천, 포천 등을 보육료 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립유치원 307명, 사립유치원 640명을 선정하여 947명의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8만원, 사립유치원은 26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북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사항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포시, 의정부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 금천구, 정읍시 등을 살펴보았다.

7)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그림의 때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이용 제한, (<http://www.daejonilbo.com>). 2022.03.07.

(1) 김포시

김포시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2세는 약 36만 4,000원에서 49만 9,000원, 만 3~5세는 약 28만원의 보육료를 외국인가정 부모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하여 2022년 9월부터 김포시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28만원의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김포시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으로 김포시 내에 체류 중인 160명의 외국인가정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김포시 내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김포시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하여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배경으로 민관의 원활한 소통의 역할과 김포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가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한국 다문화뉴스, 2022.09.16.).

(2)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는 보육현장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소와 외국인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가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육료 지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 보육조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 이용 원아로 영등포구에 90일 이상 초과 거주자로 외국국적의 만 0~5세의 외국인가정 자녀이다. 영등포구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으로 부모부담 보육료의 20%의 지원으로 연령에 따라 매달 5만 6,000원에서 9만 9,8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2022년 5월부터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그동안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던 영등포구 외국인가정 영·유아 자녀 480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가정 부모의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에 차별 없는 보육기반조성의 마련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중앙일보, 2022.04.04.)

(3)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정책의 대표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국인처우기본법으로 0세~5세의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11월 외국인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보육과 보육과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조례안을 신설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2022년부터 외국인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 2천원을 지원하며 지원액만큼 외국인가정 부모는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하였다(한국다문화 뉴스, 2022. 04 .06).

의정부의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료 일부지원도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다가서는 단계라 할 수 있다.

(4) 정읍시

정읍시는 도내 최초로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정읍시는 외국인가정 자녀가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에 한해 매월 28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법 제3조에 따른 조치이며 보육료는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그간의 보육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별 받지 않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어린이집에 입소 한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새전북신문, 2022.01.17.).

4.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1) 영·유아 언어발달

언어발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의 형성과 의사소통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언어발달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영유아가 각 문화권의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고 발달시키는가에 관한 언어형성에서의 발달이다. 둘째,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사항이다. 영·유아의 언어발달은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고 다음으로 언어가 형성된다. 의사소통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출생 후 영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울음과 미소, 표정과 몸짓 그리고 눈짓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되며 그 후 언어를 습득 한 후에도 이러한 전달방식은 신체언어로서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유아기에 이르러 기본적인 언어적 의사소통과 대상이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아직 의사소통능력이 미숙한 유아기에는 언어적 전달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전달과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처에는 어려움이 있다. 언어형성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영아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고 표정, 울음, 소리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1세 이후에는 낱말의 형성과 구사가 가능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본격적인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언어 전 단계인 영아의 소리 중 음성을 더 선호하며 특히 어머니의 말소리, 말투에 반응을 하게 된다.

생후 1개월에는 자음의 구별이 가능하며, 2개월 경에는 ‘-오~, -아~’와 같은 모음 소리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쿠잉이라고 한다. 4~6개월 이면 웅얼이가 시작되며 언어와 유사한 말소리를 구성한다. 10~12개월에서는 유성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를 구성한다. 12~18개월에는 한 번에 하나의 낱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점차 2개의 낱말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이 시작된다. 18~24개월은 명사, 동사, 형용사의 낱말이 연결된 문장을 만든다.

이러한 과정이 거치면서 마침내 2~3세 경이 되면 언어의 문법적 형태소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세 단어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평균 발화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2~6세경에는 어휘의 의미이해와 사용능력과 관계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력이 발달한다. 4세경 친숙한 대립 관계어와 시간적 관계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게 된다.

이렇듯 유아기의 언어발달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하나의 낱말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적용되는 과일반화가 나타나며 하나의 범주에 해당되는 단어에 대해 특정 대상을 정하고 그에 국한에 사용하려는 과축소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남자를 보면 모두 ‘아빠’라고 부른다거나 조사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집가 갔어’와 같이 모두의 단어에 같은 조사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언어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영·유아의 낱말 습득 형성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영·유아의 낱말 형성단계

연령	언어습득
생후 1개월	- 자음 구별
2개월	- 오, 아, 와 같은 모음구성 가능
4~6개월	- 자음 첨가
10~12개월	- 유성어를 만들고 -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 구성
12~18개월	- 하나의 낱말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시작 - 2개의 낱말 연결사용 가능
18~24개월	- 이어문기로 조나나 연결사를 생략가능 - 명사, 동사, 형용사의 2개 이상의 낱말 연결
2~3세	- 문법적 형태소 사용시작 - 세 단어 이상 문장구성 가능
4~5세	- 공간적 관계어 이해 가능 - 대립관계어와 시간적 관계어의 이해

2)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교육의 중요성

외국인가정 부모는 자신이 한국으로의 입국 행이 결정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는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이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가족동반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의 고려인과 조선족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유학생의 체류 자격자들도 이에 해당된다. 외국인노동자 중 비전문취업자는 한국으로 입국 시 나 홀로 입국한다. 비전문취업자는 한국에서 동반체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문 취업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국인가족이 한국에 모여 사는데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언어적 문제이다. 부모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 생활에 있어 혼란의 시기를 마주하게 된다. 영·유아 시기 가정에서는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다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 되면 단체 활동에서 오는 언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언어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여건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가정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철호, 2008). 특히,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다양한 체류자격별 외국인에게도 중요한 교육이며 어찌면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시 되는 체류자격 중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한국에서의 영·유아, 아동 시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친다면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가정의 어린 시절 중 영·유아시기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시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가정의 자녀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생활 중 가장 필요시 되는 부분은 바로 언어일 것이다.

3) 나라별 이주민 언어 교육

(1) 호주의 언어교육

영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서 인민을 오는 경우 성인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언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국가의 운영기관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된다. 성인의 경우 시드니의 이민자 어학원에서 무료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자녀의 돌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생의 경우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전 랭귀지스쿨의 어학원에서 일정 기간 영어 교육을 받은 후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규학교로 이관되어 교육을 받는다.

(2) 독일의 언어교육

독일은 각 시에 따라 외국인가정에 대한 행정부서를 두어 세계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이주아동과 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 학교 공부와 함께 독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나이별로 다양한 시간대를 두어 보다 효과적으로 독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직전 독일어 능력과 관계 없이 놀이를 통한 독일어 습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어 학습은 독일어 학습 능력에 따라 나누어 학습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어 학습은 독일어 공부시간과 학교 과제를 도와주는 시간 그리고 특별과외의 형식으로 독일어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언어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3) 프랑스의 언어교육

프랑스의 언어교육으로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의 적응을 위해 기본적인 프랑스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교 적응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제도의 프랑스어 입문반이 개설되어 있다. 초등학교에 프랑스어 입문반, 중등학교에 적응반을 개설하여 해당 언어의 교사를 파견하여 이주민들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미국의 언어교육

1990년대 다양한 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으로 이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모델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적응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 이주청소년 특별프로그램으로 영어능력의 향상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교 내 특별 프로그램과 독립적인 학교의 설립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다. 주요 언어인 영어수업으로 구술과 읽기 그리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사와 지리 그리고 수학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5) 한국의 언어교육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장경환, 2020). 이에 따라 한국의 언어교육은 2000년 중반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외국인 결혼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자의 한국어 교육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은 교육부에서 교육적 정책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어 학급을 통하여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주 10시간 내외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진단으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초·중·고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진단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보정과 관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초·중·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여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제3장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제1절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지원 근거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총회에서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국제조약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1991년 11월 20일 국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후 대통령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협약은 제2조의 비차별의 원칙, 제3조의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 제6조 생명과 생존 발달의 원칙, 제12조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의 4개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차별금지⁸⁾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제1항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이 있는 권한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부모의 권리를 갖고 있는 법정 후견인의 인종과 피부색, 언어와 종교 그리고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과 민족이나 인종과 사회적 출신 등에 의해 아동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제2항은 협약 당사국이 아동 본인이 아닌 아동의 부모나 부모의 권리를 갖고 있는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과

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차별금지

- ①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들의 활동, 신념과 표명된 의견 등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정부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하여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아동 최선의 이익⁹⁾은 관할 국에 거주 중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기관은 아동에 대한 모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항은 당사국이 아동의 부모와 법정 후견인, 또는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의무와 권리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배려와 보호를 하고 아동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아동의 보호와 배려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르면 관할 국 정부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법 제정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외국인가정 자녀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의 부모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 및 홍보성 행사에 대한 참여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의 아동의 생명과 생존의 발달¹⁰⁾은 협약 당사국은 모든 아동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협약

9)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최선의 이익

- 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이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0)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

-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해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관할국 정부는 외국인가정 자녀가 학교 및 사회생활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 등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외국인가정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가정 자녀의 가족 생활에 있어 부모의 돌봄 부재가 나타나는 경우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특성 상 외국인가정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갈등으로부터 건강한 발달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근거가 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¹¹⁾은 아동이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협약의 모든 이행과 다른 조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 표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의 절차 규칙에 따라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명에 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지침과 절차는 국내법 체계 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교육기회의 균등의 기초로 초등교육의 의무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에 대한 장려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따라 운영되도록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아동의 인격과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대한 최대한의 계발과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의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5조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¹²⁾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가정 자녀 특히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지원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제10조, 제11조, 제17조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의 재한외국인 등의 옹호¹³⁾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그 밖에 재한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¹⁴⁾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재한외국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과 정보제공 및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7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¹⁵⁾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1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7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보유하였던 자와 그의 직계비속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그 밖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에 따른 활동에 대해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¹⁶⁾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과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에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미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교육기본법』에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주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¹⁷⁾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그에 대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4조의 교육의 기회균등¹⁸⁾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성별과 종교, 신념과 인종, 그리고 신체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더해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¹⁹⁾의 제1항에는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자의 기본적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1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7)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18)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9)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인권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그리고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에 대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외국인가정 자녀가 성별과 인종 그리고 종교 등의 이유로 학습권이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받으며 그 능력을 평생에 걸쳐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법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학습권, 동법 제4조의 교육기회의 균등 및 제12조 학습자의 규정을 검토해보면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당연히’ 교육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동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습권과 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에 제한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교육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동법 시행령의 문제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서 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교육부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행정지침을 마련한 후 2006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 수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2008년 초등학교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지인의 보증이 있으면 전·입학이 허용되었다. 2010년과 2013년 재개정에 따라 그동안의 학칙에 따르도록 외어 있던 중학교 전·입학 절차 과정을 없앴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를 중학교 과정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2013년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외국인가정의 구성원이나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달리 학교별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칙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한계를 두고 있다. 이에 외국인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²⁰⁾.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제한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로는 외국인의 특정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또는 외국계 국민과 혼인을 한 국민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순복 외, 201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생활 정보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교육지원과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중심으로 한 정책 등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의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²¹⁾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1항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차별금지, 제2항의 교육지원 대책 마련 및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3항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과 교육 그리고

20) 교육부에서는 2001년 3월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지침을 마련한 이후, 2006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부분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2008년에는 초등학교 전입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지인의 보증만 있으면 허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재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학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중학교 전입학 절차를 없애고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진학률이나 취업률의 하락을 우려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통한 거부, 일선 교육관계자들의 정보 부재, 증빙 불가한 서류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주 아동·청소년의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2015),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언어능력의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함께 제4항 차별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적용 대상을 실질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난민의 자녀 그리고 재외동포 자녀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언어 그리고 유아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5.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청소년의 인종과 종교, 성별과 나이 그리고 학력이나 신체조건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4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3장의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복지 등은 제47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 제48조 학교 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 청소년 복지의 향상과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그리고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청소년 복지의 향상²²⁾은 제1항 청소년 복지 향상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2항 기초생활보장과 직업재활훈련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 등의 시책이 추진되는 경우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적 배려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22)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위해 구체적인 시책 마련과 제4항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청소년의 우대,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6장 교육적 선도, 제8장 청소년 복지시설 등이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 복지지원을 주요 대상으로 제2조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특별 지원, 제16조 가출 예방 및 보호와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²³⁾은 다문화가족 또는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에 필요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외국인가정과 그들의 자녀의 학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위기청소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와 제16조에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특별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근본적 문제인 학업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내용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의 의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복지지원이라 함은 규정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학습능력 향상에 국한되어 있어 외국인가정 자녀의 진로와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2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2절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1. 법무부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2007년 7월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5개년씩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논의와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출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5조에서는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년~2017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8년~2022년까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간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추진 경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17.07.18)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추진 및 추진체계 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08~2012)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08.12.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3~2017)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12.11.2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8~2022)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및 정책자문 시행(2017. 4~11)
전문가세미나(2017.7.18) 및 관계부처 간담회개최(2017.7.27)
기본계획 작성 지침 통보(2017.7.31)
인권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행(2017.9.21)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시행(2017.9.28.~10.31)
전문가 간담회(2017.10.25.) 및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2017.10.26)
기본계획(안) 부처의견수렴(2017.10.31.~11.7)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7.11.8.)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2017.12.13.~12.18)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2018.2.12.)

출처: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며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은 2023년~2027년까지 기획하고 있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며 외국인에 대하여 이민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국·체류·귀화허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수립하였다. 이에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의 소관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등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단순기능 인력은 필요에 맞추어 도입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하며 동포는 사회통합의 용이성과 한민족 역량강화 차원에서 입국 및 취업우대 정책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사회를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내정착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고 개방된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① 외국인 정책의 추진 배경

먼저 외국인정책의 개념으로 대한민국에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환경을 위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외국인 정책의 환경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의 세계적 흐름으로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이주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대응으로 지식과 정보력을 갖추고 기술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정주권리 부여 등 다양한 유치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국내의 외국인환경 변화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종래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외국인이 결혼이민 특히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국내 입국 외국인은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이 지속되며 세계 최저수준이 출산률과 함께 국적 이탈·상실자가 귀화·국적회복자보다 많은 만성적 인구순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다문화사회는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있게 부각된 사회이며 한국은 이제 외국인의 체류가 국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사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 진입과 관련된 단일민족주의 전통을 비롯하여 배타적인 정서와 더불어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와 생활양식 정립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제1차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과 법, 그리고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을 통하여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인류 국가’이며 정책목표로 적극적인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형, 외국인인권옹호이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둔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잡힌 정책 기조 유지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인식을 반영하였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며 정책목표는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목표를 두고 있다. 개방은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은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은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그리고

협력은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선 순환적 이민 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민자 유입이 국민 일자리, 사회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이민자를 유입함으로써 미래의 한국 사회 통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과 이민자의 신뢰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체류 외국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처우하여 ‘자립과 참여’의 책임을 부여하고 정착 및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와 체계적인 이민자의 인권보호 및 문화 다양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국민과 재한외국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고 외국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 및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며 정책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거버넌스이다.

이처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시대적 상황과 외국인의 입국 증가로 인해 변화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4차에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 한국어 교육

제1차, 제2차,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4] 외국인정책과 외국인 한국어 교육

기본계획	정책목표	중점과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질 높은 사회통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이민자녀 역량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 증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이와 같이 그 간의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증가한 이민자와 이민배경 자녀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제와 중점과제에 나타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 과정에 진입한 경우에 교육지원이 이루어졌다.

(4)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정책

외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215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및 단순 기능 인력 분야의 근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이며 그 이외의 재한외국인 지원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처와 지자체의 사회통합사업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지원에 편중됨에 따라 그 이외 이민자²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을 시혜적 정책의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을 심어주고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2016. 08. 22. 연합뉴스)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의 부족현상으로 재한외국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구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다. 농축산업과 예술흥행 분야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인권 실태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호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민자 증가 등에 따라 사회불안 요인으로 체계적인 대비가 부족하다. 이는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과 함께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민자 증감에 대한 국민적 태도의 변화를 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2003년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 15% 정도 증가하였고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읽을 수 있다”(2016.12. IOM이민 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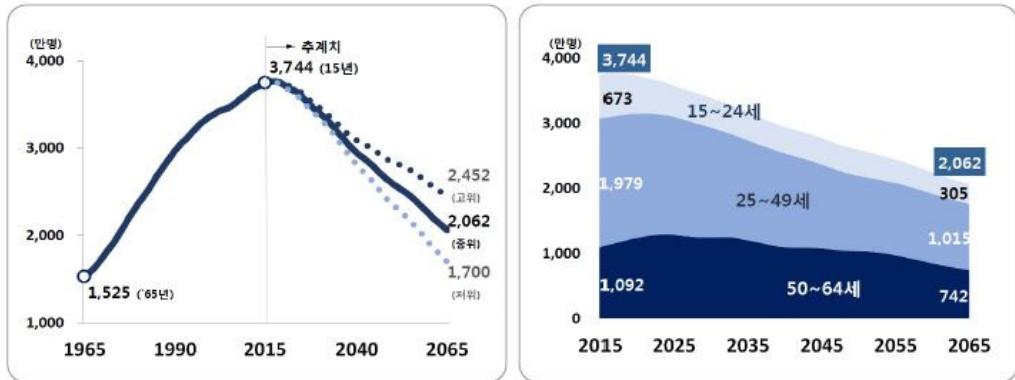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간 연계 강화 필요하다. 실효적인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지방·시민사회의 협업과 이를 연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심층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 형성에 반영하는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24) 우수인재, 영주 자격자, 국내체류 동포 등

지금까지의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한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면 이민은 21세기의 중요한 글로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각 국은 국익증대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UN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라는 국가 간 비구속적 국제규범 마련으로 이민 관련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 이민국가와 함께 많은 유럽 국가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일본과 중국도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생산·소비·부가가치 창출자) 확보 차원에서 이민 문호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과 국민 일자리 침해 논쟁 그리고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미국(보수적 이민정책), 영국(브렉시트) 등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국내 환경을 살펴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사회현상에 대응하고 향후에는 조금 더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외국 인력을 통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서 이민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017. 9월 한국은행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다만,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청년 실업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적극적 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 재한외국인과의 상생과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반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재한외국인에 대해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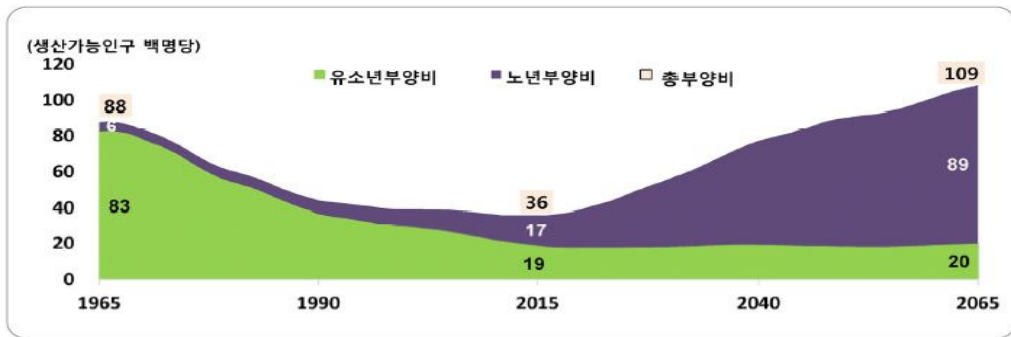
미래전망에서 생산가능 부양인비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가 증가하며 그로 인한 성장동력 및 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지속적 경고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2065년 4,302만명에 이를 전망이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 대는 연 30만명 이상 급감하여 2065년 2,062만명 수준이 될 전망으로 파악된다. 국내 생산 가능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국내 생산가능 인구추계

출처: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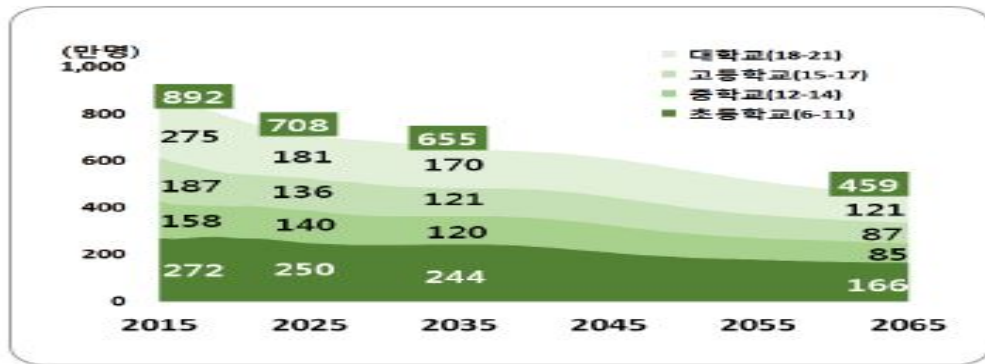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가능 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5년 3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59년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양비 추계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부양비 추계

출처: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이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살펴보면 학령인구는 (6-21세)는 2015년 892만명에서 2065년 45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과잉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학령인구 추계

출처: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바탕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선 순환적 이민환경 마련을 위한 골드타임으로 활용하여 이민자 유입으로 사회안전, 국민 일자리 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문화발전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이민자를 유입함으로써 미래의 사회통합 부담 최소화하며 “이민자 통합과 선별은 하나의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2017.4.4. 크리스티앙요프게 스위스 베른대 교수 ‘이민정책 심포지엄’). 이민자가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이민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과 이민자의 신뢰 기반의 조성 마련과 사회통합의 강화로 장기체류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처우하여 ‘자립과 참여’의 책임을 부여하고, 정착 및 통합 지원 서비스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자 인권보호 및 문화다양성 정책적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과 재한외국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 및 연구기반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으로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5) 제1차~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차별성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제1, 2차,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표 25]과 같다.

[표 25]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이민의 양적 확대 중심의 개방적 이민 허용	⇒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
사회통합 체계 마련 및 참여 증진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이는 그간의 정책 계획에서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유입하고 외국인이 자립과 성장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조성이다. 또한 이민자 유입의 경제·고용·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유입 원칙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 이민자 유입체계가 고도화 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국적·체류제도 개선하고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여부 및 현실적 이행방안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유학생의 학습 및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연수 및 유학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여 재한 외국인의 성장을 촉진 이민배경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하였다.

유학생의 학습 및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연수 및 유학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여 재한외국인의 성장을 촉진하며 이민배경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하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였고 ‘재한 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 정책 추진은 [표 26]과 같다.

[표 26]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 우수 유학생 및 외국 인재 유입에 중점	• 【유입 → 자립 → 성장 → 기여】의 • 미래 지향적 정책 추진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체계적인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 정책에 대한 추진을 살펴보면 [표 27]와 같다.

[표 27] 체계적인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 추상적·선언적 인권 옹호 •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부족	• 구체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실태 파악 및 인권증진 정책 마련

차별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권익보호협의회를 강화하며 난민심판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추진을 검토한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 등 종합적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농축산어업, 예술·문화·스포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는 [표 28]과 같다.

[표 28] 중앙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 이민 관련 위원회간 협력 부족 •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체계 미흡	• 이민 관련 위원회간 연계 강화 •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컨설팅 제공 등 협력 체계 구축 •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정책 추진

지금까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이민 관련 위원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자체의 협의체의 구성과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인프라의 강화와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는 등 시민사회와 함께 이민정책을 만들어가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좀 더 구체화 된 체계적으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요구된다.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표 29]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이민 관련 통계, 연구기반 부족	이민기록정보원 등 기반 확충
이민 관련 체계적 법제 미비	이민 관련 법제 고도화 추진

증가하는 이민자의 현황 및 경제와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구 기반 구축과 함께 이민정보 기록원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체류 증가와 함께 다양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이민 관련 법제 고도화 추진에 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실행중이며 2019년 말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계획된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요 추진과제를 실천하며 2023년부터 시행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에 한해 지원되는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들의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교육 등도 함께 지원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지만 한국인과 혼인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한·구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아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으로 2010~2012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체계적 재정비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은 3년간 실시되었으며 ‘제2,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5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현재 ‘제4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간의 정책들을 바탕으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들은 발전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정책들의 특징은 결혼이민자의 정착 주기가 장기화 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령기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학업·글로벌 역량,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적응지원을 지속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한다. 제3차 시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4차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은 더 발전된 정책과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었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1.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주민’이란 경기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외국인주민가정’이란 도내에 거소 신청을 하였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외국인주민지원단체’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아동·청소년’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이다(제2조). 외국인주민의 지위로 도내 외국인주민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이에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지원 대상으로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다(제5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과 생활 그리고 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행사의 개최,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 밖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제6조).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서울특별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외국인주민이라 말하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서울특별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제6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보호·지원, 응급 구호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 인권 보호 등이 있다(제7조).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를 둔다(제8조). 시장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제17조).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8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한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9조).

3.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도지사의 책무로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의 추진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에서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으로는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사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수립이 요구된다(제5조). 경상남도의 외국인주민 지원 대상으로 경상남도 내에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제6조)과 생활 그리고 법률과 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와 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외국인주민가정 자녀 보육 사업,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교육사업(취학전 학습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포함), 중도 입국 자녀의 사회 문화 적응지원,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범위(제7조)이다.

4.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때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란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2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진 자와 동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제2조).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제4조),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제5조). 본 조례는 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제6조). 지원의 범위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지원,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 접근에 제고를 위한 다언어 서비스 제공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제7조). 도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시·도의 관계 부서는 여성가족 정책관과 사전 협의·조정해야한다(제8조). 도 외국인주민의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협의회를 둔다(제9조). 이때 협의회의 기능은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한다(제10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에 대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16조). 자문회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능을 수행한다(제17조).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제19조).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에서는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제20조). 또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21조). 그 밖에도 도지사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제25조), 도정발전에 공로를 기한 외국인주민에 대해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제26조). 그리고 도지사는 5년마다 도내 외국인주민과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있다(제27조).

제4장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제1절 보육·교육 실태조사

1. 조사내용 및 대상

1) 조사 내용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현황과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 담당선생님, 어린이집 원장님, 외국인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 그리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내 외국인가정 밀집 지역으로 아산, 천안, 논산, 당진, 서산 지역 등을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기관으로 어린이집으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료지원, 언어교육지원, 방과 후 교육과정 지원, 외국인가정 부모의 요구사항,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의 어려움 등과 함께 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원에 대한 의견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지원으로 한국어 담당교사의 조건, 한국어 강사 채용,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시간, 외국인가정 자녀 방과 후 과정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간담회는 8월 23일 진행되었고, 다문화정책학교 교사와 함께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세미나는 7월 27일 진행되었다.

또한, 외국인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은 7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인가정 부모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님과 초등학교 교사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0]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교육지원

구분	내용
보육 (어린이집)	- 외국인가정 자녀의 체류자격 - 최초 등원 시 언어능력 정도 - 보육료 지원 - 언어교육 및 방과 후 보육 -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의 어려움
교육 (초등학교)	- 다문화정책학교 담당 교사의 요건 - 한국어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 채용 - 한국어 교육시간 - 방과 후 교육지원

[표 31] 외국인가정 부모의 자녀의 언어 교육 지원

구분	내용
한국 입국 전	- 한국에 입국 결심 후 한국어교육 여부 - 자녀에 대한 한국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대처
한국 입국 후	- 부모의 한국어부족에 따른 자녀 한국어교육 부족 -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력 어려움 -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 - 한국에서 자녀 교육 시 어려운 점 - 자녀 양육에 대한 요구 지원 - 자녀 양육 시 가장 중요한 것

2) 면담 대상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충청남도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담당 교사 3명과 어린이집 원장님 4명 그리고 외국인가정 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에 대한 세미나, 간담회, 면담 등이 각각 진행되었다. 한국어담당교사의 지역은 천안, 아산, 논산이며 어린이집 원장님의 지역은 당진, 아산, 서산, 청양지역이다. 또한 외국인부모의 면담지역은 아산, 천안, 논산, 당진 등이다. 한국어교사와 진행된 세미나와 어린이집 원장님과의 간담회는 충남연구원 에서 진행되었고, 외국인가정 부모와의 면담은 각각 지역별로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외국인가정 부모는 지역의 어린이집, 센터 등에서 섭외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거나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통역과정을 거쳐 면담이 진행되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과 보육 공급자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기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적 특성	
	성별	구분
가 1	여	논산 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담당
가 2	여	아산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담당
가 3	남	천안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담당

[표 33]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기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적 특성	
	성별	구분
나 1	여	민간어린이집 원장
나 2	여	민간어린이집 원장
나 3	여	민간어린이집 원장
나 4	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 수요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34]와 같다.

[표 34]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적 특성		
	국적	한국체류기간	자녀
다 1	카자흐스탄	6년	5명
다 2	카자흐스탄	6년	2명
다 3	카자흐스탄	13년	1명
다 4	몽골	7년	2명
다 5	키르기즈스탄	6년	3명
다 6	우즈베키스탄	8년	2명
다 7	우즈베키스탄	5년	1명
다 8	우즈베키스탄	4년	1명
다 9	베트남	17년	2명
다 10	러시아	4년	1명
다 11	키르기즈스탄	6년	3명
다 12	러시아	4년	1명

2.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1) 외국인가정 자녀의 체류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자가정 자녀의 체류자격은 주로 고려인의 자녀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이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동반비자(F-3)의 체류자격의 외국인가정 자녀가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이들의 입국 배경은 주로 아빠가 먼저 한국에 온 후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면 가족을 초청하거나 부부가 함께 입국 한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가정 자녀 또한 이러한 입국 배경을 가지고 있다.

2) 외국인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아이를 두 명 데리고 왔어요 인사를 한국어로 하지 않고 눈을 맞추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나봐요. 작은 소리지만 발음도 정확했어요(나 1)
원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트이고 이제는 정말
잘해요. 외국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잘해요.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따라다니면서 인사도 잘하고 재잘재잘 대요.(나 2)*

외국인자가정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에 등원 시 한국어로 의사소통 정도는 처음 원에 왔을 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한국어의 발화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3)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엄마들이 더 잘 알아요. 아이를 두 명 데리고 가면 원비를 깎을 수 있다는 것어요.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나 봐요. 그리고 우리 원에 온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어요. 1명의 보육료를 감소하고 받아요.(나 1)

우리 어린이집은 재외동포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모두 일하러 가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비싸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국적법에 의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나 봐요.(나 2)

저희 원에 다니는 외국인가정 자녀는 보육료를 내요. 그러나 방학 때 본국에 가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2주 정도 쉬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모두 내야하니까 한 달을 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원은 보육료는 다 받고 차량비 등은 받지 않아요. (나 3)

100일 지나서 온 외국인가정 자녀가 있어요. 이 아이는 보육료를 내고 다녀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부분은 받지 않아요. 아이의 분유, 기저귀 등 받지 않고 있어요. 가끔 엄마에게 이야기 하지만 보내지 않더라고요.(나 4)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보육료지원은 국적법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두 명씩 보내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깎아준다.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에 오는 아이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가정 자녀도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하는 경우 보육료를 깎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비용에 관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가정 자녀도 한국에서 지속적인 삶을 이어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4) 언어교육 및 방과 후 보육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교육과 방과 후 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처음 원에 오는 경우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득해서 이야기를 해요. 늦어지는 이유는 집에서 그 나라 말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나오는 날이 늘면서 아이들 말도 늘더라고요.(나1)

외국인가정 아이에게는 방과 후 교육비를 받지 않지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나 2)

내국인가정 자녀에 비해 습득정도는 늦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아진다고 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어린 나이에 오는 경우에는 습득이 더 빠르다고 한다. 방과 후 교육에 있어 비용 부담은 하지 않지만 다른 아이들과 같은 보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의 어려움

외국인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처음 어린이집에 오는 경우 한국어가 되지 않아 아이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해 통역사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언어가 되지 않으니 아이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힘들어요. 물론 이것은 언어 교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깐요.(나 2)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차량운행을 해야 하며 저녁 늦게까지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돌봄 교사의 지원도 필요해요(나 3)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어를 교육할 한국어교사가 필요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와의 대화나 학습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아이와 밀착해서 아이만을 위한 한국어교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나 4)

현재 저출산으로 영유아의 감소로 인해 외국인가정 자녀가 보육료를 모두 부담하지 않더라도 보육지원은 받아야만 되는 현실을 이야기 했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한국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업 시 때문에 초기에는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사항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며 어린이집에 통역사 지원과 한국어교사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부족으로 나타나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보육기관의 언어교육 및 방과 후 보육과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의 어려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가정에서 고향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어의 생소함과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 보육료는 국적법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기관에 한국어 교사는 없으며 이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지원도 없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기관에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감액과 방과 후 보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온전히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남고 있으며 외국인 가정 자녀의 돌봄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

1) 다문화정책 학교 담당교사의 요건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담당 교사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저는 다른 학년을 신청했는데 교감선생님께서 한국어 학급을 맡는 것이 어떤지 연락이 와서 맡게 되었어요.(가 1)

다문화학급의 담임을 맡는 경우 따로 교사의 자격은 없어요(가 3)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담당 교사의 요건은 따로 나타나지 않으며 학교에서 지정에 의해, 또는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다문화학급을 맡은 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등에 대한 추가 교육 및 보수교육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많은 경험으로 학생 교육에 있어 여유로운 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강사 채용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강사 채용에 있어 채용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강사는 한국어교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 이중언어 강사는 구하기 힘들어요. 특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강사네요.(가 1)

학생들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 한국어 강사 채용과 관련이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경우 한 학교에 3명, 4명 한국어 강사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가 2)

*다문화학생이 많은 경우 한국어학급을 더 늘려 한국어강사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해요.(가 3)*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한국어 강사의 일주일 수업 시간은 고용노동법 관련하여 14시간을 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학생, 외국인가정 자녀가 많은 경우 한국어 강사의 인원을 늘려 채용하는 기관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이중언어 강사 채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유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한국어의 부족 등과 함께 정확한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 따라 이동거리의 발생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학교 교과과정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며 한국어의 부족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또래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3) 한국어 교육 시간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학급 교실이 있어요. 교실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은 14명이고 10명이 러시아,
4명은 베트남 국적이에요. 한 교실의 3개 클래스에서 6명을 교육하기 때문에
2명씩 3클래스로 운영을 해요.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이 적지는 않고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을 묶어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은 짧지 않아요. 또 도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수업보조 인력이 있는데 저학년 러시아 아이를 대상으로
통역하고 있어요. 이 분도 주 14시간이어서 아이들 3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가 1)*

*한국어 교사를 채용해서 3~4명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생 3~4명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한 명씩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해요. 선생님이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깐요.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마다 언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어요. 주로 기다리는 시간과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덜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중언어강사 채용이 어려워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를 드렸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가 2)

한국어학급의 학생은 6명이에요. 러시아 3명, 몽골 2명, 태국 1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개인차가 있어요. 한국에 입국 한 시기에 따라 한국어 정도가 달라요. 개인차이가
있기 때문에 5학년 아이 한 명을 놓고 매일 2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수업보조 인력을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 수업 내용을 통역해주다
보니 수업에 집중도 하고 학업성취도도 올라갔어요. 부모와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가 3)

한국어교육 시간은 주 14시간의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을 주로 2~4명 정도
그룹의 형태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교육 받고자
하는 학생이 14명인 경우와 이보다 많은 경우의 학교라면 한국어교사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아이들이 적은 경우 개인 학습 시간이 늘어나지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의 경우 처음
입국한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지도도 이루어지고 통역으로 한국어의 어려움
이 해소되어 학업성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중언어 강사는 아이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부모와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학교생활 중 어려운 사항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시간은 주 3~4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 3~4시간의
한국어 학습으로 인해 학교 교과과정에 편입되었을 경우 언어적 부족으로 나타나는
교과과정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방과 후 교육지원

외국인가정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지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학급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국어, 사회, 과학 등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미술, 체육과 같은 활동시간에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시간에도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방과 후 과정을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가 1)

방과 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돈을 내는 과정은 아마 특기적성일 거예요. 한국어 수업 과정이 끝난 아이들은 원 학급으로 돌아가요. 이런 경우에는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요.(가 2)

학력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으로 방과 후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가 3)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기적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외국인가정의 자녀가 특기적성의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부족으로 과정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둘째, 교육비의 부담으로 자신의 특기 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 정책학교 담당교사의 요건, 한국어 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 채용, 한국어 교육시간, 방과 후 교육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다문화정책학교 담당교사의 요건은 없으며 학교의 상황에 맞게 다문화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학급을 맡은 담임교사는 주기적으로 다문화이해과정의 보수교육 등에 참여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학교의 한국어강사와 이중언어강사의 수업시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는 주 14시간 이내로 채용이 되지만 주 14시간의 수업을 보장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어 교사를 2명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도 주 14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국어 교사가 2명 이상 채용되는 학교는 외국인학생의 비중이 높으며 높은 비중으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주 3~4 시간의 수업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가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또래 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도 나타날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의 채용에서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 강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이중언어 강사의 요건에 맞는 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자녀의 한국어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은 그룹으로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시간은 한국어를 습득하기에 적은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가정 자녀의 방과 후 교육지원으로 학교 교과과정의 부족에 따른 교육지원은 진행되고 있으나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입국 전·후 보육 및 교육

1. 한국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경험

외국인가정 부모는 한국으로 오기 전 자녀의 한국에서의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점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한국 입국 후 자녀 양육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1)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경험

한국에 입국하기로 결심 한 후 한국어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오기 위한 서류를 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한국에 왔어요. 우리는 3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아이가 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준비하면서 한국에 왔어요. (다 1)

우리는 한국에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어요. 남편과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어 잘 못해요. 남편은 일하러 가니까 저보다 한국 말을 더 잘해요. 저는 아이들과 집에 있어서 잘 못해요. (다 2)

남편이 한국으로 일하러 왔어요. 저는 6개월 후 유학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후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다 4)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애들이 있어서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남편은 고려인 이라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저는 한국말 할 줄 몰랐어요.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어도 배우지 않았어요. (다 5)

연구 참여자 12명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12명 중 고려인은 10명으로 이들은 한국 입국 허가가 나면 바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에 입국 전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국하였다. 이러한 입국 동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바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국 입국 전 자녀가 한국에서 겪을 어려움 등에 대한 고민

한국에 입국하기로 결심 한 후 자녀가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후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아이가 한국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 5)*

*걱정은 조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서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다 11)*

연구 참여자 12명 중 4명이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고 8명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 한 4명의 외국인 부모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 가정자녀의 한국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입국 전 한국어교육 경험과 한국 입국 전 자녀가 한국에서 겪을 어려움 등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외국인가정 부모는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남편이 한국으로 입국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입국 하거나 남편이 먼저 한국에 입국 한 후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후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의 입국이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 입국 전 자녀가 한국에서 겪을 어려움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

보다는 부모와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였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며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더 컸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 한 후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2. 한국 입국 후의 한국생활 적응 검토 및 부모 지원

1) 부모의 한국어부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입국 후 부모의 한국어 부족으로 자녀도 한국생활과 학교 교육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도 언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러시아어로 이야기 하니깐요. 그래서 아이도 러시아말을 사용해요. 한국말
보다 러시아말을 더 잘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돼요.(다 1)

한국에 올 때 우리 딸은 한국말 못했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고향 말을 사용해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도 받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없어 한국어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집에서 이야기 할 때 몽골말로 말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딸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요.(다 4)

집에서 고향 말로 말해요. 애기도 함께 러시아말을 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한국말 부족해서 한국 애들처럼 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해요.(다 8)

한국에 온 지 6년 됐어요. 애가 학교에 다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와
말도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같은 학교에 러시아어로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논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지 못하고요. 이런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돈이 많이 들지만 안 보낼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잘 못하면 아들이 많이 힘들어 할거니까요(다 11)

부모가 고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녀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습득하는 언어는 부모나라 언어이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보육료가 많이 비싸지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빨리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친구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의견도 있었다.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의 망설임

자녀의 양육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40만원도 넘어요 우리는 애기들 둘인데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내가 봤어요(다 2)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남편과 저는 일을 했어요 한국말도 모르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내요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애기들과 지냈어요(다 5)

연구 참여자 12명 중 한국 입국 시 자녀와 함께 입국한 부모는 4명으로 처음에 한국에 입국 했을 때 한국어도 모르고 처음 해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부모가 일터에 나가는 경우 자녀의 돌봄 지원이 필요했고 자녀가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빠른 언어습득이 필요했으나 어린이집 비용이 너무 많아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돌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자녀의 학교 진입 시 부모의 노력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이보다 더 몰라서 도와 줄 수 없어요.(다 6)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아들 만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들을 학원에도 보내고, 운동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다 10)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애기 낳았을 때도 한국 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존감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자존감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씩씩하게 지냈어요. 애기랑도 더 잘 놀아 주려고 노력하고요.(다 9)

부모의 한국어 부족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부족함이 나타날까 걱정이 되며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서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해 주는 것에 대한 희망과 자녀가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것이라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한국에서 자녀교육 시 어려움

외국인가정에서 자녀를 한국에서 교육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애기들 5명이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집 돈 너무 많이 내서 태권도나 피아노 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요.(다 1)

부모가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애들 어릴 때에 한국어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월세 내고 고향에 돈 보내고 생활하다보니 애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못해줬어요.(다 4)

딸이 궁금한 것이 많아요. 저에게 어떤 질문하면 대저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해요
한국문화를 잘 모르고 그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경험을
많이 못했어요. (다 8)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가 한국에서의
여러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도 이야기 했다.
이는 외국인가정 부모도 자녀와 같이 한국에서의 경험 부족 등과 함께 한국어의 부족과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5) 한국에서 자녀 양육 시 필요 사항

한국에서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국 아이들과 같은 지원을 받고 싶어요.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한국인 아이들이 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에 와서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다 1)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못 하는 것 많아요. 이유는 한국어를 잘 몰라서예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는 어렵지만 꾸준히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학교 공부, 친구들과 관계 이런 것들 모두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다 4)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할 거예요. 남편은 고려인이고 아이들도 고려인
이에요.(다 5)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우리 애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어 많이 부족하고 학교공부 잘 못 따라가서 어려움이 있어요.(다 8)

외국인가정 부모 대부분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감에 있어 한국인과 동등한 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 12명 중 9명이 고려인이다. 이들은 자신이 고려인임을 강조하여 부모님의 고향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향을 찾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한국어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한국어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외국인가정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생활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6)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크니까 한국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아이가 한국에서 그런 생각 안하고 살면 좋겠어요.(다 4)

지금은 한국어가 중요하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러시아 말 하고 밖에서는 한국말을 하면서 지내니까 한국어가 자꾸 부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한국어 더 많이 공부 하면 좋겠어요.(다 11)

자녀가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과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입국 후 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대하여 부모의 한국어 부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한 망설임, 한국에서 자녀 교육 시 어려움과 자녀 교육 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들이 고려인임을 강조하였고 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며 자신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3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실태 분석

1.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분석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생활하고 가정 밖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사항의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로 처음 어린이집 이용 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어 어휘의 확장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확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 초기 언어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언어습득은 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속적인 한국생활에 있어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는 지원되고 있지 않았으며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부담은 외국인 부모의 몫으로 남았다. 따라서 외국인가정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담이 발생하거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한국어의 습득은 어휘량의 부족으로 늦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언어습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 분석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지원은 주로 다문화정책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학급 담임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외국인가정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는 기본적 환경이 다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가 이에 해당되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한국어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및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강사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어강사와 다문화강사는 다문화정책학교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어강사와 다문화강사의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국한되어 있어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어려움의 지원에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방과 후 교육지원으로 주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내국인 자녀와 같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 학력 사항은 교육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특기적성의 경우 자기부담으로 진행된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비 부담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3.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외국인가정 자녀의 부모는 한국 입국 전 한국어를 배우고 입국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한국어 학습이다. 그리고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에 다닌다. 이들은 한국 입국 초기나 현재의 한국어 능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자녀도 가정에서 본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참여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가정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험하였으며 아이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돌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 한 후에도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심은 높지만 자녀보다 한국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려운 학습 등에 대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부모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며 자신의 자녀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제5장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중심의 개선 방안

제1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지원

1.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6월 기준 약 200만 명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은 487,989명으로 재외동포(F-4)이다.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비전문취업(E-9)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충청남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58,086명이며 이들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3,686명이다. 이 중 5세 이하의 외국가정 자녀수는 4,325명이며 이 중 충청남도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기관이용 수는 2022년 1,03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가정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2장의 외국인가정 보육·교육 현황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외국인 관련 기관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은 꾸준히 논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국적법에 의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은 지역의 주민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은 충청남도 체류 거주 외국인이다. 외국인주민은 지역에 거주 하면서 주민세의 납부가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한국인과 같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주민에게 주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한국 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민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세 납부를 고지한 것은 외국인을 주민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주민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며 이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²⁵⁾에 해당되는 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제1호²⁶⁾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보육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다. 이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기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법 제34조²⁷⁾ 무상보육에 대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2항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 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외국인주민의 자녀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지원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쳐 지자체별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이 시작되었다. 외국인가정의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청주시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 시흥, 부천, 포천 등을 보육료 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립유치원 307명, 사립유치원 640명을 선정하여 947명의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8만원, 사립유치원은 26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타 지역에서도 지역별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충청남도의 외국인

-
- 25) **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6)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7)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 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국민과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하게 보호받고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으로 추진체계는 충남도청, 충남 15개 시·군이며 추진방법은 충남도청과 15개 시·군의 지역별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후 외국인가정 자녀가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과정에서 어려움의 해소 방안 마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내국인과의 평등한 지원으로 학교 입학 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이 이들에게는 한국사회 적응 및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기관 한국어 강사 지원

외국인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 초기에는 한국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어린이집에 입소한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체계적인 보육 전달을 할 수 없으며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외국인가정 자녀는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적응 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의 사용이 원활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여러 명의 어린이에 대하여 공동보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아이만을 위한 1대1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에 있어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첫 입문 한국어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사의 지원이 요구된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가정에서의 언어와 어린이집의 언어가 다르다. 이들은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두 언어에 노출되고 처음 몇 달 동안 언어신호를 푸는 작업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언어 자극이 필요하다. 이는 처음 듣는 어휘를 습득하기 위한 연습과정이 요구되는데 듣기과정에 이어 그것을 바로 말하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집단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부족한 어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 환경적 습득 어휘에 대한 이해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초기 언어 습득에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특정 자극을 주어야 비로소 해당 어휘를 습득 할 수 있다. 이후에 그것과 같은 언어자극을 주거나 다른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 반응도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자극을 늘릴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후 초기 언어습득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단순히 언어만 노출시킨다고 하여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언어노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을 때보다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 집중력과 언어 노출 동기는 더욱 확장 될 수 있다. 언어학습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국어습득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시 된다. 따라서 보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기관 지원은 국민과 차별받지 않으며 공정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진학 전에 기초 한국어 학습의 진행으로 기초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학습의 기회 증진과 학교 진학 후 또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안으로 추진체계는 충남도청, 충남 15개 시·군, 읍·면·동이며 추진 방법은 충남도청과 15개 시·군의 지역별 어린이집에 외국인 가정 자녀가 보육을 받는 경우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 습득을 위해 단순한 노출 환경보다는 언어습득의 동기부여를 진행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있지만 이들은 다른 아동들과 여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가정 자녀에게만 집중할 수 없으며 언어습득에 있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습득에 있어 1대 1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대화에 있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언어 확장을 늘리는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족센터와 연계학습 프로그램 강화

충청남도 지역에 15개 시군에 가족센터²⁸⁾가 있다. 아산에는 가족센터 분점을 두고 있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 및 자녀교육과 상담, 통번역 지원과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각 시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의 서비스 대상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북한이탈가족, 중도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가족센터에서 자녀교육 사업으로 1:1 자녀학습 지원, 언어발달서비스, 중도입국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문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1개 시군의 가족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외국인 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의 연계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서비스 지원이 실시되기를 바란다. 물론 일부 가족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연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비한 상황이다. 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의 연계 학습 프로그램 확대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초기 언어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8) 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제2절 외국인가정 자녀 언어 교육지원 확장

1.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 강사 지원 확대

1)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원 확대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에서 학교 입학 전 한국어교육이 진행된다. 그 후 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지원은 다문화 한국어학급 교사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 2~3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교사는 교육부 지침에 주 10시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어교사를 14시간으로 채용하여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법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충청남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정책학교에는 다문화 전담 교사가 1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문화학생이 많은 아산 둔포초등학교 3명, 아산 신창초등학교 6명, 아산 남성초등학교 2명의 전담교사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강사는 천안신촌초등학교와 논산 반곡초등학교에서는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두 곳 학교를 제외한 다른 다문화정책학교에 채용이 되었다. 특이사항으로 온양 용화중학교는 한국어강사의 자격이 없는 강사가 채용되어 있었다. 이와 다른 다문화 정책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사를 1명에서 6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정책학교의 다문화강사의 채용은 천안 입장초등학교와 성환초등학교는 다문화강사가 채용되지 않았으며 다른 다문화정책학교의 다문화강사는 주로 러시아어 강사를 채용하였으며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의 3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강사도 3명이 채용되었다.

한국어강사는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학교별 다문화학생의 수는 다르고 다른 학생 수에 따라 한국어강사의 수는 다르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시간은 매우 짧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어강사의 확충이 요구된다. 언어를 배움에 있어 일주일에 2~3시간 많으면 4시간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이 1대 1로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며 1시간에 2~3명의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한국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적은 학교에서는 한국어강사를 다른 학교에 지원하여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라는 명칭으로 2~3개의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 학교에서 한 학생으로 한국어 교육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강사의 추가적 자원 확대를 요구한다.

2) 다문화강사 채용에 따른 교육 및 취업시간 확보

학교에서 다문화강사의 역할은 주로 언어가 되지 않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통역 등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자로 해당 언어가 가능한 자를 채용한다. 다문화강사의 채용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채용에 있어 이중언어가 완벽한 다문화강사의 채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다문화 정책학교 교사와 함께 세미나에서 나온 사항이다.

다문화강사도 한국어강사와 마찬가지로 주 14시간으로 채용되었으며 그 시간 동안 다문화강사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강사이다. 다문화 강사의 역할은 다문화학생 한국어학습 협력 수업 및 통역 지원, 다문화학생 한국어학급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에서의 통역, 다문화학생 한국어학급 학생 교육활동(한국어, 한국문화, 창의적 체험활동 등)관련 업무 지원, 관내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그 외 학교장(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진행된다. 한국어강사와 같이 채용학교에서의 통역 지원이 아닌 관내 학생의 통역지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학교에서 다문화강사의 채용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강사 채용 조건을 살펴보면 필수요건으로 첫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둘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셋째, 한국인(국적법상 한국인)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외국인으로 F-2, F-4, F-5, F-6 국내취업 자격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면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한국인인 경우 러시아어 능력시험 (TORFL) 3단계 이상 소지자 또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소재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 이중언어(한국어, 러시아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다문화강사의 채용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러시아어를 전공한 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의사소통 만으로 학교에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TOPIK 4급 이상 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후 종합평가 합격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의 내용으로 이중언어 강사 교수법이 진행되며 이론수업과 모의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는 한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본인 나라의 문화를 교육하거나 학교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통역과 한국어 학습 지원을 하고 있다. 다문화강사의 채용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다문화강사의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1년 2번 다문화강사의 보수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교육을 마친 다문화강사를 대상으로 취업시간 확보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강사로 취업이 되는 경우 이들은 한국어 강사와 동일하게 주 14시간 이내의 취업활동만이 가능하다. 다문화강사의 수업시간 확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및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시간 확충

한국어 교원의 자원 확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학습 시간은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익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강사가 주14시간의 계약 시간 동안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학습 강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학습시간이 몇 시간 인지의 파악이 중요하다. 주로 언어를 익히기 위해 한국의 언어교육센터 등 대학의 언어교육 기관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시간은 일 2~3시간 주 4~5일 진행된다. 또한 평생 교육원의 외국인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주 2~3회로 1회에 한 해 2~3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어 학습 시간을 살펴볼 때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경우 한국으로 입국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자녀나 또는 한국어의 부족 현상이 큰 다문화가정 자녀이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단계나 학습 시간의 고려는 이들의 언어발달 검사에 따라 한국어 학습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 시간은 주 4시간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어 학습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1대 1 학습에 있어 4시간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문화 정책학교 다문화담당교사는 1대 1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학생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학생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1대 1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4시간의 수업을 온전히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익히는 다문화학생에게 더욱 학교 교과과정의 어려움을 부과 시키는 것이며, 또래 관계 형성에서 내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우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의 과정을 더 겪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시간 확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강사와 다문화 강사의 지원확대 및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시간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한국어강사와 다문화강사의 주 14시간 채용 개선 사항으로 기간제교사로의 채용 검토가 요구된다. 시간을 정하여 한국어교육 지원과 다문화강사의 필요를 두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업추진 방안의 추진체계는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충남 15개 교육지원청, 충남 15개 시·군, 읍·면·동의 초·중·고등학교이며 추진방법은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충남 15개 교육지원청, 충남 15개 시·군, 읍·면·동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문화·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강사, 다문화강사의 시간을 늘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노력

1) 다문화전담교사의 다문화 역량제고

다문화정책학교에서 다문화전담교사는 주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역할이 주어진다. 다문화담당교사의 요건으로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대로 담당이 된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의견으로 맡게 된다. 다문화학급은 전담하는 교사의 자격은 없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이라는 특이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의 여러 유형의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 다문화전담교사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다문화전담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등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자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고 다문화학생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교육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 다문화교육전공이 있어 그 과정에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어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의 실시 등을 학습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전담으로서의 역할이 다문화학생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별도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으나 시간과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다문화정책학교의 다문화전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가정의 이해 등의 보수 교육 등에 참여하여 다문화 역량 제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확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교육부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다문화정책학교이다. 충청남도의 다문화정책학교는 유치원 33개원 한국어학급 21개교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정책학교(유치원)는 32개원으로 천안 7개원, 공주 1개원, 아산 6개원, 서산 4개원, 논산 2개원, 홍성 6개원, 태안 2개원, 보령 1개원, 당진 2개원, 예산 1개원, 청양 1개원이 있다. 또한, 한국어학급(초·중·고)은 22개교로 천안 7개교, 아산 9개교, 서산 1개교, 논산 3개교, 당진 1개교가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정책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문화학생으로 외국인가정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정책학교를 거점학교로 두어 근처 3개 학교를 묶어 한국어교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한국어 교육지원을 받는 다문화학생이 주 14시간 운영되는 한국어 교사의 시간으로 2~3개 학교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교육시간의 부족으로 한국어 능력의 향상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으로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으로 다문화정책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은 없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원기관이 다르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보육과 교육에 있어 유치원은 교육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육·교육의 양극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보육·교육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한국어교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사의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공통된 누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뉘어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과정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다문화 한국어학급(초·중·고)이 현재 21개교이며 지역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이다. 그러나 한국어학급(초·중·고)이 있는 5개 시 또한 한국어교사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원 5개 지역과 한국어학급이 없는 지역에 추가 한국어학급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지원 강화 마련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가 한국어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이 있는 학교에 한국어강사와 다문화강사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학교의 확대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3) 외국인가정 자녀의 돌봄시스템 구축

외국인가정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 후, 학교 교과과정을 마친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라 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돌봄은 학교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 지원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돌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돌봄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가족센터에서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정보제공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지역의 돌봄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안내하거나 읍·면·동에서 외국인 가정 자녀가 거주지 등록을 하면 외국인가정 자녀의 돌봄 기관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와 같은 돌봄 기관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마련이 요구된다.

제3절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 재량권한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1)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나타난 외국인주민의 역할과 지원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르면 목적으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조)이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영위가 가능하다. 또한, 제2조 “외국인주민의 용어로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제3조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제7조 외국인주민의 지원범위²⁹⁾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등의 사항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서 외국인을 지역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내국인과 같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조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29)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개정 2020.4.1.>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조례사항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또한 “~강구해야 한다.”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량권한을 의무조항으로 전환되어도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6조 지원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로 명시되어 있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조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나타난 재량권한을 의무조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6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조례의 새로운 제정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타 시도의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점차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보육료 지원 근거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타 지역 외국인주민조례를 검토하여 충청남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과 정착 지원을 위한 사항과 함께 외국인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인 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조례의 신설이 요구된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조례에 외국인의 지원으로 충남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교육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과

본 연구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의 개선방안 마련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들 가정 유형은 재외동포가정, 외국인노동자 가정, 유학생 가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재외동포 가정의 수가 가장 많고 외국인 노동자 가정도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한국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위해 가족의 입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외국인 유학생가정의 자녀도 한국에서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가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자녀교육이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러나 한국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외국인가정 부모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가 어린 경우 일터에 나가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바로 언어이다. 외국인 부모는 한국의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과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시기 언어 습득은 초등학교 입학 후 교과 학습과정 습득 및 또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의 중요성과 한국 초기 입국 시 한국어습득의 주요한 요인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 내국인과의 차별 없이 언어습득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외국인 주민 자녀는 체류 외국인가정 자녀 중 만 5세 미만 영·유아 자녀는 2020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4,32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가정 만 5세 미만 영·유아 자녀는 2020년 1,007명이고 2022년 1,03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2020년 외국인가정 자녀 만 5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23%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다문화학생은 2020년 기준으로 15,927명으로 경기도, 서울, 인천 다음으로 외국인가정 자녀가 많이 체류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학생의 중도탈락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중도탈락은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으로 한국어 부족에서 시작된 교과과정의 어려움과 또래관계 형성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의 법적 지원 근거를 찾아보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르면 관할국 정부는 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한 법 제정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외국인가정 자녀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의 부모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에 필요한 배려와 보호를 하고 아동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아동의 보호와 배려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의 재한외국인 등의 옹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그 밖에 재한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되어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과 보육지원은 지자체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은 그 간 국적법에 의한 지원으로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보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의 외국인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은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의 구체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과 보육기관의 한국어 강사 지원이 요구된다.

외국인가정자녀는 국적법에 의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충청남도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은 충청남도의 주민이다. 이들은 주민으로서 주민세 납부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에게도 국민은 아니지만 주민과 동등한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여 외국인가정 자녀가 국민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가정에서 본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에 있어 언어습득 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강사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가족센터와의 연계 학습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가족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연계 학습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의 연계 학습 프로그램 확대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초기 언어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이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강사와 다문화강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강사와 다문화 강사의 주 14시간 수업 진행에 있어 외국인가정 자녀에게 충분한 언어학습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자원 확보와 함께 다문화강사 채용에 따른 교육 및 취업시간 확보가 요구된다. 이는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시간이 확충될 것이며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다문화전담교사의 다문화 역량제고와 함께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외국인 가정 자녀의 돌봄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언어학습 발달을 위한 지역 내 돌봄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조례에 나타난 사항으로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강구해야 한다.”로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나타난 재량권한을 의무조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충청남도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규정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타 지역 외국인주민조례를 검토하여 충청남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과 정착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분리하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조례의 신설이 요구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빈도는 국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가정의 증가는 충청남도의 미래의 활력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의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인력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외국의 계절제 근로자의 유입을 지속화 하고 있지만 이들의 입국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력의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바라보고 주민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지자체 수요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충청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외국인의 유치를 장려한다면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다른지역으로 체류지를 옮겨 갈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의 지원확장을 통해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의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이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기관의 세미나와 간담회 그리고 외국인가정의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예산과 시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연구에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향후 연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되었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실태 등의 사항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 부모에 대한 언어 및 직업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구성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2012), 쉬운말로 읽는 아동권리협약과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 교육기본법, 제1조, 3조, 4조, 12조.
-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
- 김미정(2018),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현황과 과제, 경기도 가족연구원 이슈분석 제107호.
-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 박순복·박선영·송효진·선보영·강기정(2013),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혜랑·김현철(2016), 다문화가정의 사용언어가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제54권 제4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보육통계DW시스템
-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1-2023).
- 법무부(2008),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1-2023).
- 법무부(200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1-2023).
-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 법무부 보도자료.
- 서울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
- 양계민·윤민중·신현옥·최홍일(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34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8조.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2015),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이철호(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새국어생활 18권 제1호.

장경환(2020),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제20권 제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세경 외(2021), 코로나 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주민등록법, 제6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다문화학생 유형 및 통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57조, 제89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3조, 제16조, 제18조.

충청남도(2021), 다문화정책학교세부현황.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충청남도홈페이지(2022), 출산·보육복지, 출산보육지원, 보육료지원.

통계청(2020),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한국은행(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IOM이민정책연구원(2016), 외국인 및 이민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 분석.

보도자료

대전일보(2022),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그림의 떡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이용 제한, 2022.03.07., (<http://www.daejonilbo.com>).

인천일보, '김포시 이달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시, 거주 160여명 외국인자녀 혜택', 2022. 09.14),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114>)

중앙일보, '영등포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2022.04.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

한국다문화뉴스, '김포시,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 2022.09.16., (<https://blog.naver.com/sdjebo2/222875825919>).

한국다문화뉴스, '의정부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실시' 2022.04.06.), (<https://blog.naver.com/sdjebo2/222693470068>).

새전북신문, '정읍시 외국인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2022.01.07., (<http://www.sjbnews.com/news/news.php?number=734297>).

■ 집 필 자 ■

연구책임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진	홍은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22-05 ·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 방안 검토

글쓴이 · 윤향희 · 홍은일 · 전세경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612-5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An abstract graphic consisting of a dense network of red dots of varying sizes connected by thin red lines. The network is more concentr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with lines radiating outwards towards the left. The dots vary in size, with some being significantly larger than others, possibly representing nodes of different importance or types in a network diagram.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12-5